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2년 상주시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2. 8.

1.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계			10	10	4	74,586	3	373,150	0	0
1	◆ ◆ 과	근속(우대)승진자 승진에 따른 후속 승진 부적정		1						
2	◆ ◆ 과	특별승진 임용 부적정		1						
3	◆ ◆ 과	승진 임용 부적정		1						
4	○○○○○○○○실 등 31개 부서	특산품 구입 예산 집행 부적정 (기관경고)		1						
5	●●●●●과 외 3 개 부 서	건강검진 공가 사용 부적정	1		1	394				
6	◆ ◆ 과	●●●●●공사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 부적정		1						
7	◆ ◆ 과	청원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1							
8	○○○○○○○○실	승소판결 확정 등에 따른 송무처리 부적정	1		1	48,242				
9	㉠㉠㉠㉠과	석유사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처분 감경 부적정		1						
10	상 주 시 16개 읍면동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1						
11	㉠ ㉠ ㉠ ㉠ 과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적정		1						
12	㉠㉠㉠㉠과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미구성 등 부적정	1							
13	■ ■ ■ ■ 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재선충병방제 절차 이행 부적정		1						
14	■ ■ ■ ■ 과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1							
15	● ● ● ● 과	지하수 개발 관련 신고대상 사후관리 소홀	1							
16	▽ ▽ 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부적정	1							

번호	소관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17	▲ ▲ 과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1	15,400	1	230,986		
18	●●●●●●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1	10,550	1	128,850		
19	■ ■ 과	건축허가(신고) 업무 부적정		1						
20	☒ ☒ ☒ ☒ 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 운영사업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1				1	13,314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근속(우대)승진자 승진에 따른 후속 승진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상주시 ◆◆과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등 인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일반직 9급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8급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고,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9급 공무원을 8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8급 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9급 공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 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고,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1호, 2018. 12. 24.)」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히 구분 관리하여야 하고,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으로, 그 바로 하위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간주하되, 근속승진자가 승진하여 현원이 소멸할 경우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제4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근속(우대)승진자가 심사를 통해 승진하게 될 경우 당시 증가된 것으로 간주했던 근속(우대)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당초의 직급으로 환원되어 이를 승진요인으로 책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상주시 ◆◆과에서는 2019.3.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에 우대승진자의 당해 직급 우대승진 여부를 기재하지 않아 8급 우대승진자 1명을 7급 승진대상자로 의결하여 그 후속 8급에는 결원이 없는데도 9급 1명을 8급 승진대상자로 의결하게 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2019.3.5.~2020.6.22.까지 3회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심의자료에 당해 직급의 근속(우대)승진 여부를 기재하지 않아 근속(우대)승진자의 상위직급 승진의결 후속으로 9급 1명과 8급 2명을 각각 8급 및 7급 승진대상자로 의결하게 하였다.

[표] 근속(우대)승진자 상위 직급 승진에 따른 후속 승진 현황

(단위: 명)

승진심사일	근속승진자 승진		후속 승진			부당 승진		
	승진직급	승진인원	승진직급	승진요인	실제승진	계	9급→8급	8급→7급
계		3		0	3	3	1	2
2019.03.05.	8급(우대)→7급	1	9급→8급	0	1	1	1	
2019.06.21.	7급(근속)→6급	1	8급→7급	0	1	1		1
2020.06.22.	7급(근속)→6급	1	8급→7급	0	1	1		1

그 결과 승진할 수 없었던 9급 1명, 8급 2명 등 총 3명이 8급 또는 7급으로 부당하게 승진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특별승진 임용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상주시 ◆◆과에서는 2021. 10.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6급 ♀♀♀에 대해 ♀♀♀♀♀♀♀의 상주시 대규모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공로를 인정하여 2022. 1. 6. ○○5급으로 특별승진 임용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 제3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할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임용령 제38조의4 제3항에 따르면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제35조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에서는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

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 ◆◆과에서는 ◎◎6급 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대상자에 대해 미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대상자로 의결하고, 이후에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승진심사 대상자로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5급 결원이 2명이였다면 승진후보자 명부 10위까지와 특별승진 실적이 인정된 ♡♡♡(명부 순위 16위)를 포함한 총 11명을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과에서는 2021. 10. 15.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주) 배터리 소재 공장 상주시 유치과정에 기여했다는 점을 특별승진 실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승진 의결까지 하였고, ♡♡♡ 승진 결정에 따라 ◎◎5급 결원을 1명으로 간주하여 11명이 아닌 결원 1명에 대한 명부순위 7위까지만 승진심사를 받게 되어 8, 9, 10위 명부 등재자는 승진임용 심사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승진 임용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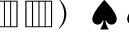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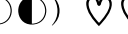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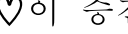
상주시 ◆◆과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등 인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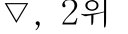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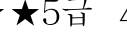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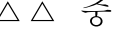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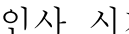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험, 승진, 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0조에서는 5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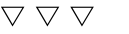
따라서 상주시 ◆◆과에서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조속히 충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결원을 보충함으로써 해당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결원 보충 시기를 늦추는 등 공정한 인사운영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기존 상주시의 4급 승진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

기(전월 중순)로 비춰 볼 때 2022. 1. 1. 국장이던 4급() 
의 공로연수로 발생한 결원 1명 보충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2021년 12월에 개최
하지 않고 5급() 이 승진소요 최저연수 4년이 되는 2022. 1. 1.이
경과된 2022. 1. 5.에서야 개최하여 승진의결하였다.

그 결과 2021년 12월 중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면 승진되었을 당시
명부 순위 1위 5급 , 2위 5급  중 1명이 승진하지 못하고,
당시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도래로 승진할 수 없었던 이 승진인사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게 되어 명부에 등재되고 승진대상자
로 결정되면서 특혜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서기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현황

명부 작성일	2021.7.1.	2021.8.19.	2021.11.30.	2022.1.5.
	1	1	1	1
	2	2	2	3
	미등재	미등재	미등재	2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업무추진
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기 관 경 고 · 주 의 요 구

제 목 특산품 구입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실 등 31개 부서(기관)
내 용

상주시에서는 지역 특산품인 꽃감, 쌀 등을 구입하여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라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대해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항목으로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57호, 2018. 9. 27.)에 따르면 일반운영비(201)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 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명시하면서,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서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채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405)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 2019. 4. 18.)에 따르면 일반운영비(201목)의 일반수용비는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

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홍보비를 집행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비효율적인 소지가 있는 전광판, 방송 등 다수의 영상매체 출연을 통해 중복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로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에서는 홍보를 위한 지역 특산품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예산과목에서 구입하고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상주시에서는 [표]와 같이 31개 부서(기관)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125건 6억 1,319만 원 상당의 지역특산품을 사무관리비 과목으로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였다. 특히 2019년 상주시 종합감사 당시 사무관리비 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같은 사항이 지적되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개선 조치 없이 현재까지 사무관리비로 특산품을 구입하고 있다.

그 결과 특산품 제공에 대한 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예산 편성 기준액이 정해진 업무추진비 예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019~2022년 사무관리비로 지역특산품 구매 현황

연번	부서명	구입 건수	구입액(원)	비 고
	합 계	1,125	613,195,500	
1	☒☒☒☒과	19	5,805,000	
2	■□과	10	2,686,000	
3	●○과	6	1,309,200	
4	▲▲▲▲과	68	22,281,500	
5	▽▽▽▽▽▽실	8	2,520,000	
6	■□■□과	70	36,545,200	

연번	부서명	구입 건수	구입액(원)	비 고
7	■ ■ ■ ■ ■ 과	9	4,550,000	
8	◀ ◀ ◀ ◀ ◀ ◀ ◀ ◀ 소	10	4,150,000	
9	⊙ ⊙ ⊙ ⊙ ⊙ ⊙ ⊙ 실	216	100,914,400	
10	☆ ☆ ☆ ☆ 센터	51	19,563,000	
11	♠ ♠ ♠ ♠ 과	22	18,581,000	
12	▨ ▨ ▨ ▨ 과	7	2,833,600	
13	▣ ▣ ▣ 과	24	4,679,000	
14	◁ ▷ ▷ ▷ ▷ 과	22	6,646,000	
15	● ● ● ● ● ● 단	91	63,603,500	
16	▷ ▷ ▷ ▷ 과	17	3,278,000	
17	♣ ♣ 소	24	7,711,000	
18	○ ○ ○ ○ 과	18	3,004,000	
19	▤ ▤ ▤ ▤ 과	140	133,600,500	
20	♠ ♠ ♠ ♠ 관	13	2,320,000	
21	△ △ △ △ △ 과	14	6,023,000	
22	◇ ◇ ◇ ◇ ◇ ◇ 과	54	8,118,500	
23	● ○ ● ○ 과	20	5,104,000	
24	♡ ♡ ♡ ♡ ♡ 과	52	76,677,000	
25	○ ○ ○ ○ 국	70	35,013,100	
26	◆ ◆ 과	8	5,555,000	
27	★ ★ 과	21	12,322,000	
28	● ● ● ● 원	13	8,538,000	
29	◆ ◆ ◆ ◆ ◆ ◆ ◆ ◆ 소	4	2,545,000	
30	☺ ☺ ☺ ☺ 과	16	4,832,000	
31	☹ ☹ 과	8	1,887,000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21. 1. 1.부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부합되지 않게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상주시에 대해서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하오니,(기관경고)
- ②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강검진 공가 사용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상주시 ◆◆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복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검진의 목적으로 공가를 신청한 상주시 소속 공무원은 해당 일시에 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무지로 복귀하거나, 근무상황부에 공가를 취소하고 연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상주시 ●●●●과 △△△는 2020. 5. 16.(토) 건강검진을 시행한 후 같은 달 18일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공가를 신청하였으며, ◆◆면 ⅢⅢⅢⅢ 외 2명은 2년에 1회 공가를 허가받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 2년 연속 공가를 신청하여 건강검진을 받는 등 [표]와 같이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 공가 부적정 사용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공가신청일 (공가신청/2019,2020)	건강검진일 (공가신청/2020,2021)	부적정 사용
1	●●●●과	◆◆6급	△△△	2020.05.18.(월)	2020.05.16.(토)	공가사용일, 검진일 불일치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공가신청일 (공가신청/2019,2020)	건강검진일 (공가신청/2020,2021)	부적정 사용
2	○○면	★★5급	♡♡♡	2019.09.27.	2020.10.29.	2년 연속 공가 사용
3	▣▣▣▣과	◎◎5급	●●●	2020.11.10.	2021.12.17.	
4	▤▤▤▤과	▽▽6급	●●●	2020.11.12.	2021.11.09.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건강검진 공가 부정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394,380원을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7. 7. 18. 시행)」 제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7. 7. 18. 시행) 제9조의3에 의하면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에 의하면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안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018-24호, 2019. 1. 1.)제3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 원이상 이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주시 ◆◆과에서는 2019. 6. 4. 아래 [표 1]과 같이 관내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인 LED가로등 기구 구입을 ◆◆과에 요청하였다.

[표 1] ○○○○공사 관급자재(LED가로등 기구)구입 요청 현황¹⁾

(단위 : 원)

1) 세부 구매 요청 및 구매현황은 붙임과 같음

요청일자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요청부서
계		582		272,686,000	
2019.6.4	LED150W	367	431,000 ~ 612,000	187,007,000	☒☒과
	LED 50W	215	328,000 ~ 430,000	85,679,000	

LED가로등 기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며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으로 물품구매시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중 LED150W는 구매금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구매하고,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LED50W는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인 LED가로등 기구를 [표 2]와 같이 구입하면서 동일 규격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다수²⁾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점 본사가 □□□□시에 소재한 ♠♠♠♠♠♠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으로 구입하였을 경우 19,830,630원³⁾ 정도의 예산 절감이 가능함에도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공사 관급자재(LED가로등 기구)구입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원)

계약일자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업체명 (계약자)
합계		582		280,448,400	
2019.6.14.	LED150W	123	387,900~446,000	50,402,700	♠♠ ♠♠ ♠♠
	LED 50W	32	430,000	13,760,000	
2019.6.18.	LED150W	116	416,700~490,500	80,846,400	
	LED 50W	85	430,000	36,550,000	
2019.6.21.	LED150W	128	491,400~550,800	67,057,200	
	LED 50W	98	295,200~369,900	31,832,100	

2) 경상북도 관내에만 LED150W 110곳, LED50W 126곳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음

3)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유사한 성능의 제품(KS인증)으로 조회한 결과 LED150W의 경우 290,000원 부터, LED50W의 경우 180,000원부터 구매가 가능하나 동일한 물품으로 적용하였을 경우(10% 하한율)

[붙임]

□ 과 관급자재 구매 요청 현황

요청일자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공사구간	비고
합계		582		272,686,000	• 150W : 187,007,000원 • 50W : 85,679,000원	
2019.6.4.	LED150W	77	431,000	33,187,000	△△△△로(◆◆교~▽▽3)	
	LED 50W	32	430,000	13,760,000		
	LED150W	46	496,000	22,816,000	◇◇2길 구간 외 2개소	
	LED150W	34	545,000	18,530,000	▽▽대로(▽▽▽▽탑~▽▽4)	
	LED 50W	55	430,000	23,650,000		
	LED150W	82	463,000	37,966,000	△△△△로(●●교4~★★교)	
	LED 50W	30	430,000	12,900,000		
	LED150W	38	612,000	23,256,000	▽▽대로 구간 외 2구간	
	LED 50W	33	328,000	10,824,000		
	LED150W	58	546,000	31,668,000	△△△△로(♡♡~◆◆교4)	
	LED 50W	35	349,000	12,215,000		
	LED150W	32	612,000	19,584,000	■로 구간 외 2구간	
	LED 50W	30	411,000	12,330,000		

□ 과 관급자재 구매 현황

계약일자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공사구간	업체명 (계약자)	
합계		582		280,448,400	• 150W : 198,306,300원 • 50W : 82,142,100원		
2019.6.14.	LED150W	77	387,900	29,868,300	△△△△로(♠♠교~▽▽3)	♠♠ ♠♠ ♠♠	
	LED 50W	32	430,000	13,760,000			
	LED150W	46	446,400	20,534,400	◇◇2길 구간 외 2개소		
2019.6.18.	LED150W	34	490,500	46,677,000	▽▽대로(▽▽▽▽탑~▽▽4)		♠♠ ♠♠ ♠♠
	LED 50W	55	430,000	23,650,000			
	LED150W	82	416,700	34,169,400	△△△△로(●●교4~★★교)		
	LED 50W	30	430,000	12,900,000			
2019.6.21.	LED150W	38	550,800	20,930,400	▽▽대로 구간 외 2구간		♠♠ ♠♠ ♠♠
	LED 50W	33	295,200	9,741,600			
	LED150W	58	491,400	28,501,200	△△△△로(♡♡~♠♠교4)		
	LED 50W	35	314,100	10,993,500			
	LED150W	32	550,800	17,625,600	■로 구간 외 2구간		
	LED 50W	30	369,900	11,097,000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청원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상주시 ◆◆과는 「청원경찰법」 및 「상주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서 소속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방호와 경비를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1. 가스 분사기 관리·운영 부적정

「청원경찰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는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는 분사기를 휴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가스 분사기 등 청원경찰 보유장비 현황 (▼▼▼▼관 보유·관리)

연번	총 종	명칭(제조사)	제조번호	허가번호	제조(교부)일	비 고
	계		4점	▼▼경찰서 소지허가		
1	가스분사기 리 벌 버 형 액체분사식	블랙타이거2 (▽▽▽▽)	DI08002855	1217	2007.09.04	장비구매 후 감사일까지 액체가스 (약제탄환)를 교환하지 않음
2	가스분사기 리 벌 버 형 액체분사식	블랙타이거2 (▽▽▽▽)	DI05002856	1218	2007.09.04	
3	전기충격기	SDJG-3 (☆☆☆☆☆☆)	DHGS01741437	1055	2008.08.28	제품생산 단종으로 유효성능 여부 확인 불가
4	전기충격기	SDGS-3 (☆☆☆☆☆☆)	DHGS04118644	1056	2008.08.28	

한편 ▼▼▼▼관 소속 청원경찰 AAA에게 지급된 블랙타이거2 리벌버형 액체 가스 분사기의 [약제 탄환(6발)] 유효성능에 대하여 제조사에 자문⁴⁾한 결과

약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확인되며, [표 1] 과 같이 소지 허가일은 2007년 9월로 유효기간이 감사일 현재 기준으로 14년 8개월이 경과 되었는데도 이를 교체·정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약제 탄환은 소모성 제품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적 특성상 내장된 액체 가스는 자연적 누출 현상이 발생하므로 가스 분사기가 실제 상황에서 성능이 유지되도록 유효기간 범위를 고려하여 일정한 주기로 교체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성능 유지와 유효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가스 분사기 사용절차, 사용요건, 사용시 주의사항 및 가스 분사기 관리·점검 등에 대한 매뉴얼 또는 사용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유사시 실효성 확인을 알 수 없는 장비를 보유·운용하고 있다.

2. 청원경찰 복제구매 및 지급 부적정

「청원경찰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는 제복은 정모, 기동모, 근무복(하복, 동복), 한여름 옷, 기동복, 점퍼, 비옷, 방한복, 단화, 기동화 등과 장구와 부속물을 구분하고 있고, 이를 청원경찰 급여품표⁵⁾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7조에는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 3. 30.)」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 집행 지침’에는 피복은 업무 성격상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

4) BLACK TIGER II(총포형 액체분사, 피스톤압축식, 분사거리 2~4m, 장전탄환 6발, 제조사 ☆☆☆☆(◎◎도 ◇◇◇시 ◆◆면 ○○로 1720-5) 대표전화 □□□-□□□-□□□□

5)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청원경찰 급여품표 기준에는 근무복(하,동복) 한여름 옷 단화는 1년으로, 기동복 외투 방한복 점퍼 기동화 방한화 장갑 호루라기는 2년으로, 정모 기동모 비옷은 3년으로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고, 정기지급일을 따로 규정하고 있음

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 구매는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원경찰에게 피복을 급여 및 대여할 때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별표 3]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청원경찰 업무에 적합한 통일된 복제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도 1] 내지 [별도 8]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부서에서 직접 구매하여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2] 청원경찰 복제구매 및 지급현황 등

부서명	구매일	물품(수량)	지출금액(원)	청원경찰(배치일)	구입매장	규정복제지급 또는 착용여부	비 고
계			2,687,000				
☆☆☆☆ ☆☆센터	2019.10.07.	작업복 동복/하복 각 1벌	297,000	BBB (2015.7.13.)	▢▢▢▢▢▢	규정복제 미지급, 미착용	구입매장은 청원경찰법 규정에 따른 복제를 생산 또는 판매·취급하지 않는 매장으로 확인됨
	2020.03.16.	작업복 동복/하복 각 1벌, 모자	330,000		♠♠		
	2021.03.05.	작업복 동/하복한복 각 1벌, 모자	430,000		♠♠		
♡♡♡♡ ♡♡♡소	2018.06.20.	근무복 1벌	200,000	CCC (2015.7.13.)	♣♣	복제착용	구입매장은 청원경찰법 규정에 따른 복제를 생산 또는 판매·취급하지 않는 매장으로 확인됨
	2019.07.09.	근무복 1벌	200,000		▢▢▢▢▢▢		
	2020.01.22.	근무복 1벌	200,000		♣♣		
▼▼▼관	2018.02.13.	방한복 1벌	200,000	AAA (2015.7.13.)	♣♣	규정복제 미지급, 미착용	구입매장은 청원경찰법 규정에 따른 복제를 생산 또는 판매·취급하지 않는 매장으로 확인됨
	2019.01.28.	방한복 1벌	200,000		▨▨▨▨▨▨		
	2020.01.16.	근무복 1벌	200,000		▨▨▨▨▨▨		
	2021.03.11.	근무복 상의1개, 하의2개, 방한모	430,000		●●●●●		
☐☐☐☐ ☐☐소				DDD (2018.7.1.)		규정복제 미지급, 미착용	
○○○○ 과				EEE (2020.11.1)		복제착용	부속물 미지급
※공통사항 : 청원경찰 배치(7개)부서는 법령 기준에 따른 복제(제복·장구·부속물·기습표장·휘장)를 정상 지급하지 않음 근무 시 총기를 휴대하지 않을 때는 분사기를 휴대하고 근무하여야 하는데도 구매 또는 지급하지 않음 ※그외사항 : ☐☐☐☐☐☐소의 경우는 현 근무자 배치 이후 복제를 단 한번도 구매 또는 지급하지 않음							

그런데도 상주시에서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부서별로 복제를 구매하고 있고, ☆☆☆☆센터 등 3개 부서는 [표 2]와 같이 청원경찰법령에 따른 복제를 생산 또는 판매·취급도 하지 않는 ●●시 3로 308. ♠♠(outdoor) ▢▢▢▢점 등에서 법령 규정과 다른 피복 2,687천 원을 구매하여 청원경찰 3명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가스분사기 등 보유장비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관리·운영 하고, 복제는 청원경찰법령 규정에 따라 구입·지급·착용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승소판결 확정 등에 따른 송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상주시 ○○○○○○○실은 소속기관의 송무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또는 상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 및 행정소송 업무⁶⁾를 수행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를 한 경우에는 패소자에 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소송사건이 승소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승소로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의 추심을 위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소송상대방에 대하여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6) 2018.1.1. ~ 2022.3.30. 소송사건 총 84건 처리(민사소송 30건, 행정소송 54건), 소송사건 수행 결과(승소 32건, 패소 17건, 취하 등 17건, 진행 중 17건, 기타 1건)

그런데도 상주시는 아래 [표 1], [표 2]와 같이 2018. 10. 2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승소 판결로 확정된 6건과 취하 3건에 대한 소송비용 48,242천 원을 관할 법원에 확정 신청 누락 등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행정소송 등 원고승소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미회수 내역

연번	사 건 명	원 안 사건번호	원 고	소송사건 처리부서	최종확정 판결일자	미회수 소송비용(원)	비고
계	6건			5개 부서		36,142,401	
1	[민사]손해배상(기)	◀◀◀◀◀◀◀◀◀◀	◇◇◇	♣♣과	2018.10.20.	1,060,237	
2	[민사]손해배상[국]	○○○○○○○○○○○○	◆◆◆	♣♣과	2020.02.18.	12,414,880	
3	[민사]손해배상(기)	◁◁◁◁◁◁◁◁◁◁	□□□	♣♣과	2021.04.28.	7,329,444	
4	[민사]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	♡♡♡	▣▣▣▣과	2021.06.24.	1,003,620	
5	[행정]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	♠♠♠	▤▤▤▤과	2020.07.11.	6,621,700	
6	[행정]가축분뇨배출 시설변경불허가처분 취소	☆☆☆☆☆☆☆☆☆☆	▨▨▨	○○○○과	2021.07.03.	7,712,520	

[표 2] 행정소송 등 소취하 등에 따른 소송비용 미회수 내역

연번	사 건 명	원 안 사건번호	원 고	소송사건 처리부서	취하일자	미회수(착수금) 소송비용(원)	비고
계	3건			3개 부서		12,100,000	
1	[행정]건축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	●●● 외 2	㊦㊦과	2019.09.17.	3,300,000	
2	[행정]집합금지 처분등 취소의 소	○○○○○○○○○○○○	▣▣▣ ▣▣▣▣▣▣	㊦㊦㊦과	2021.04.14.	5,500,000	
3	[행정]태양광전기 (발전)사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	♡♡♡♡♡♡♡♡♡♡	(주)▣▣ ▣▣▣▣▣▣ 대표 ◆◆◆	▤▤▤▤▤과	2021.08.30.	3,300,000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송무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주의)
- ② 승소 판결로 확정된 6건과 취하 3건에 대한 소송비용 48,242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석유사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처분 감경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상주시 ㉠㉠㉠㉠과는 ㉠㉠㉠㉠㉠㉠으로부터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를 통보받아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처분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개시일	사업장 위 치	적발기관 (적발일자)	위반사항	처분 일자	행정처분 내역		
					정당한 처분	실제 처분	사 유
㉠㉠주유소 (㉠ ㉠ ㉠) 2019.7.1	㉠㉠시 ㉠면 ㉠로383	㉠㉠㉠㉠ (2021.1.27)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굴삭기에 주유(판매)함	2021. 3.11.	사업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73,898,260원	사업정지 45일에 같은하는 과징금 36,949,130원	법령 마속지 등 (경위서 별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4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에 따르면 시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2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1] 1. 일

반기준, 라목에 의하면 행정처분권자는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 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 90일 또는 과징금 73,898,260원을 부과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을 감경하여 처분할 때는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내부 검토⁷⁾를 거쳐서 감경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상주시 ○○○○○과는 위 [표]와 같이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굴삭기에 주유(판매)한 행위로 ○○○○○○○○○으로부터 법령위반자 통보를 받고 행정처분을 하면서, 〰〰주유소(대표자 ●●●)가 2019. 7. 1. 사업을 개시하여 적발일(2021. 1. 27.) 기준으로 영업기간이 1년 7개월에 불과한데도,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유로 과징금 2분의 1을 감경한 36,949,13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반업소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7) 「상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4조 (전결대상 사무) 별표 1 (본청 사무전결) 소관별 : ○○○○○과, 담당 업무명, 43호 사목 법령위반 업소처분 (2)항 과징금에 대하여는 전결자를 담당과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경 상 북 도

통 보 · 주 의 요 구

제 목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16개 읍·면·동
내 용	

상주시 ○○읍 등 24개 읍·면·동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으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⁸⁾이 1,000㎡ 미만일 때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의 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 상한인 1,000㎡를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그 농지 소유자로 하여금 그 사유 발생일부터

8)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총 면적

1년 이내에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알려야 하며, 농지 소유자가 농지처분의무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는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개인 및 세대별 기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확인하여 농지소유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상주시는 동일 사안이 '2019년 종합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읍 등 16개 읍·면·동에서 [불임]과 같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한 ☒☒☒ 등 54명(47세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처리하면서 개인 또는 세대 단위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85필지, 65,010㎡의 농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하였다.

그 결과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거나 소유 상한을 초과한 신청인들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1,000㎡를 초과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계획서를 보완하거나 해당 농지를 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② 앞으로는 「농지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 및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붙임]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내역

연번	소관 부서	신청인		처리 일자	농지소재지		지목	취득면적 (㎡)	총면적 (㎡)	부적정 내역
		성명	주소							
합계	16개 읍면동	54명			85필지			65,010		
1	●●면	AAA	▣도 ▣시 ▣동구 ▣로 688, ▣동 ▣호	2020-05-04	●●면 ○리	556	답	1,868	2,433	개인단위로 1,000㎡초과
					●●면 ○리	562	전	565		
2	●●면	BBB	▢도 ▢시 ▢구 ▢로 61, ▢동 ▢호	2021-01-21	●●면 ▼리	200-1	전	486	1,997	"
					●●면 ▼리	432-1	답	1,511		
3	●●면	CCC	○시 ○구 ○3길 10 (○○동)	2021-01-21	●●면 ▼리	432-1	답	1,511	1,511	"
4	◁△면	DDD	▢도 ▢시 ▢구 ▢로 38, ▢동 ▢호	2020-07-08	◁△면 ●리	869-3	답	2,112	3,080	"
				2022-02-08	◁△면 ●리	339	과수	774		
					◁△면 ●리	343	과수	195		
5	▣▣면	EEE	▲도 ▲시 ▲대로 16길 16, ▲동 ▲호	2020-04-10	▣▣면 ▣리	13	답	655	2,946	"
					▣▣면 ▣리	13-2	전	1,448		
					▣▣면 ▣리	13-3	답	843		
6	▢▢면	FFF	▲도 ▲시 ▲로 147, ▲동 ▲호	2020-12-01	▢▢면 ▢리	401-3	전	2,048	2,048	"
7	□□면	GGG	▣도 ▣시 ▣로 268, ▣동(▣▣동)	2021-06-30	□□면 ●리	284	전	1,316	3,954	"
					□□면 ●리	285-1	전	1,312		
					□□면 ●리	285-4	전	1,326		
8	□□면	HHH	▣도 ▣시 ▣2길 79-1 (▣▣동)	2019-12-20	□□면 ◇리	828-4	답	2,021	3,275	"
					□□면 ◇리	828-5	답	1,254		
9	◇◇면	JJJ	▶시 ▶구 ▶남로 33, ▶동 ▶호	2019-10-01	◇◇면 ◁리	133	과수	1,700	1,700	"
10	◇◇면	KKK	▼시 ▼구 ▼로18 길 10, ▼동 ▼호	2019-04-23	◇◇면 ▷리	475-1	전	1,220	1,220	"
11	◇◇면	LLL	▢시 ▢구 ▢로 1686번길 16, ▢동 ▢호	2019-12-17	◇◇면 ◆리	325-5	전	2,724	5,686	
					◇◇면 ○리	149-1	답	2,962		
12	□□면	MMM	○시 ○구 ○대로 134번길 14, ○동 ○호	2021-04-26	□□면 ◇리	830-5	답	1,991	1,991	"
13	●●면	NNN	◆시 ○구 ♣로20 길 158, ◁동 ☆호	2019-03-26	●●면 ▢리	226	답	460	3,874	"
					●●면 ▢리	226-1	답	360		
					●●면 ▢리	233	답	1,561		
					●●면 ▢리	234	답	1,493		
14	□□면	OOO	▷시 ▷읍 ▷8길 22-13, ▷동 ▷호	2021-11-12	□□면 ◆리	335	답	1,765	1,765	"
15	▢▢▢면	PPP	●도 ●시 ●읍 ●로229번길 25, ●호	2021-03-26	▢▢▢면 ○리	740	답	2,405	4,475	"
					▢▢▢면 ○리	740-1	답	2,070		
16	▢▢동	QQQ	▢도 ▢시 ▢대로 2811, ▢동 (▢▢동)	2021-08-18	▢▢동	69-9	전	416	1,653	세대단위로 1,000㎡ 초과
		▢▢동			75-12	전	411			
		RRR			▢▢동	69-9	전	416		
					▢▢동	75-12	전	411		
17	▢▢면	SSS	◁도 ◁시 ◁면 ◁3길 24-30	2020-08-26	▢▢면 ◁리	411-1	전	901	1,802	"
		TTT			▢▢면 ◁리	411-1	전	901		

연번	소관 부서	신청인		처리 일자	농지소재지		지목	취득면적 (㎡)	총면적 (㎡)	부적정 내역
		성명	주소							
18	㉠㉠면	UUU	▲도 ▲시 ▲면 ▲남2길 9-3	2019-04-15	㉠㉠면 ㉠리	66	전	776	2,072	세대단위로 1,000㎡ 초과
					㉠㉠면 ㉠리	66-2	전	78		
					㉠㉠면 ㉠리	66-4	전	44		
					㉠㉠면 ㉠리	66	전	776		
					㉠㉠면 ㉠리	66-2	전	78		
					㉠㉠면 ㉠리	66-4	전	44		
		VVV		2019-04-24	㉠㉠면 ㉠리	66-2	전	157		
				2019-07-31	㉠㉠면 ㉠리	69-2	전	60		
2020-11-27	㉠㉠면 ㉠리	69-3	전	60						
	WWW	㉠시 ㉠구 ㉠대로 700번길 23, ㉠ 동 ㉠호	2020-08-31	㉠㉠읍 ㉠리	257	전	639	1,278	"	
XXX		㉠㉠읍 ㉠리		257	전	639				
20	㉡㉡면	YYY	㉠시 ㉠구 ㉠대로 59길 9, ㉠호	2021-02-19	㉡㉡면 ㉠리	30	전	784	1,567	"
		ZZZ			㉡㉡면 ㉠리	30	전	784		
21	㉢㉢면	㉢㉢㉢	△도 △군 △읍 △4로34번길 8, △ 동 △호	2020-10-15	㉢㉢면 ㉢리	535	전	789	1,577	"
		㉢㉢㉢			㉢㉢면 ㉢리	535	전	789		
22	㉢㉢면	㉢㉢㉢	㉢도 ㉢시 ㉢구 ㉢면 ㉢연로 314-8, ㉢동 ㉢호	2020-05-12	㉢㉢면 ㉢리	685-3	전	593	1,455	"
		㉢㉢면 ㉢리			686-1	전	135			
		㉢㉢면 ㉢리			685-3	전	593			
		㉢㉢면 ㉢리			686-1	전	135			
23	㉣㉣면	㉣㉣㉣	㉣도 ㉣시 ㉣면 ㉣길 65-15	2019-12-17	㉣㉣면 ㉣리	252-2	전	314		기존 세대 소유 토지와 합산하여 1,000㎡ 초과
24	㉣㉣동	㉣㉣㉣	㉣도 ㉣시 ㉣2길 9-32 (㉣㉣동)	2021-03-08	㉣㉣동	515	과수	819		"
					㉣㉣동	516-5	전	8		
25	㉣㉣면	㉣㉣㉣	▲시 ▲구 ▲로 125, ▲동 ▲호	2020-11-09	㉣㉣면 ㉣리	328	전	188		"
26	㉣㉣면	㉣㉣㉣	▲시 ▲군 ▲읍 ▲북로 26, ▲동 ▲호	2021-02-17	㉣㉣면 ㉣리	862	답	206		"
27	㉠㉠읍	㉠㉠㉠	㉠시 ㉠구 ㉠대로 195, ㉠동 ㉠호	2021-03-22	㉠㉠읍 ㉠리	774	답	686	1,337	기존 세대 소유 토지와 합산 및 개인단위 1,000㎡ 초과
				2021-05-13	㉠㉠읍 ㉠리	779	전	651		
28	㉡㉡면	㉡㉡㉡	㉡도 ㉡시 ㉡로 353, ㉡동 ㉡호	2022-01-17	㉡㉡면 ㉡리	30	전	241		기존 개인 소유 토지와 합산하여 1,000㎡ 초과
29	㉠㉠면	㉠㉠㉠	㉠도 ㉠시 ㉠로 160-5, ㉠동 ㉠호	2020-06-11	㉠㉠면 ㉠리	519	답	869		"
30	㉢㉢면	㉢㉢㉢	㉢도 ㉢시 ㉢로 865 ㉢동 ㉢호	2019-11-08	㉢㉢면 ㉢리	216-4	전	104		"
31	㉣㉣면	㉣㉣㉣	㉣도 ㉣시 ㉣로 5-1 (㉣㉣동)	2020-05-28	㉣㉣면 ㉣리	763-2	답	885		"
32	㉠㉠읍	㉠㉠㉠	°도 °시 °로 256-18, ▲동 ▲호	2021-02-24	㉠㉠읍 ㉠리	226-1	답	78		"
				2021-02-25	㉠㉠읍 ㉠리	291-1	전	192		

연번	소관 부서	신청인		처리 일자	농지소재지		지목	취득면적 (㎡)	총면적 (㎡)	부적정 내역
		성명	주소							
33	바바읍	♡♡♡	○시 ◆구 ○로 248,○동 ■호	2021-02-24	바바읍 ●리	226-1	답	78		기존 개인 소유 토지와 합산하여 1,000㎡ 초과
				2021-02-25	바바읍 ●리	291-1	전	192		
34	바바읍	㉠㉠㉠	▲도 ○시 ○대로 15길 38, ▲동 ▲호	2021-02-25	바바읍 ●리	291-1	전	192		"
35	◆◆면	㉡㉡㉡	▲도 ▲시 ▲로 135 (▲▲동)	2020-02-24	◆◆면 ◇리	113-1	전	127		"
36	㉢㉢동	㉣㉣㉣	○도 ○시 ○문1 길 64 (○●동)	2022-01-27	㉢㉢동	285-4	전	523		"
37	●●면	㉤㉤㉤	■도 ◁시 바읍 ■중앙로 111	2021-07-01	●●면 ○리	28-6	전	63		"
					●●면 ○리	28-7	전	322		
38	▲▲면	㉥㉥㉥	▼도 ▼시 ▼로 80,○동 ○호	2021-02-16	▲▲면 ▼리	782	전	331		"
39	●●면	㉦㉦㉦	●시 ◁구 ◇로 70, □동 ■호	2021-07-23	●●면 ●리	138	전	98		"
					●●면 ●리	141	전	63		
40	●●면	㉧㉧㉧	○시 ㉨구 ○로96 길 32, ▲호	2022-03-15	●●면 ▼리	196-1	전	507		"
41	□□면	바바바	°도 °시 °구 °읍 ° 중앙로 27, °동 ° 호	2020-06-05	□□면 ◆리	374-3	답	641		"
42	□□면	■▲■	■도 ■시 ■로 57, ■동 ■호	2021-04-07	□□면 ▲리	384	답	476		"
43	㉩㉩면	■▲■	○도 ▼시 ○면 ▼로 1047-8	2021-10-25	㉩㉩면 ●리	56	전	639		"
44	◆◆면	■▲■	㉪도 ㉪시 ㉪면 ㉪1길 43-50	2021-11-10	◆◆면 ▼리	668	전	272		"
45	㉢㉢면	■▲■	◎도 ◎시 ◎면 ◎ ◎로 4698-5	2021-06-01	㉢㉢면 °리	601-1	과수	922		"
46	바바읍	○●○	○시 ●구 ○로51 길 25,○동 ㉩호	2020-08-13	바바읍 ●리	438-2	전	396		"
47	바바읍	◀◀◀	○도 ㉬시 ○면 ■ 로 772-43	2021-10-27	바바읍 ●리	25	전	562		"

※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상주시 ⊙⊙⊙⊙과에서는 농지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 외⁹⁾의 지역에 있는 농지를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용제한면적 1,000㎡를 초과한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르면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면적과 농지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하는 「농지업무편람」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동일한 농지(1필지)를 같은 종류의 시설(단독주택 등) 부지로 전용하고자 농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각각 농지전용을 신청할 경우는 1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제한면적을 적용¹⁰⁾하도록 하고 있다.

9) 농림지역·관리지역(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적용

10) 시설별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적용지침 시달(○○과-10268, 2000.9.7.)호 관련

따라서, 위 부서는 단독주택 신축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원인이 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허가를 받은 농지가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한 전용면적이 1,000㎡을 초과하는 경우 전용을 허가하여서는 안되고, 하나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같은 시설 부지로 전용할 때에도 신청면적의 합이 1,000㎡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와 같이 ●●시 ●●동 468번지(면적 : 4,560㎡)에 단독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2019. 1. 7. AAA(토지소유자)과 AAA의 사용승낙서를 받은 BBB이 각각 신청한 농지전용허가(협의)에 대하여 1건의 농지전용 신청으로 간주하지 않고 개별 주체로 판단하여 허가제한면적을 초과(1,665㎡)하였는데도 농지전용을 허가하였다.

[표] 농지전용허가(협의) 현황

(단위: ㎡)

소재지	필지면적	전용면적	허가목적	농지구분 (용도지역)	협의일자	허가일자	토지소유주	수허가자 (전용자)	지번분할
●●동 468	4,560	662	단독주택	진흥 밖 (생산관리)	‘19.1.7.	‘19.1.21.	AAA	AAA	468-12
”	”	993	”	”	‘19.1.7.	‘19.1.21.	”	BBB	468-10
”	”	586	”	”	‘19.2.27.	‘19.3.12.	”	CCC	468-9
”	”	671	”	”	‘19.2.27.	‘19.3.12.	”	DDD	468-11
”	”	791	”	”	‘19.2.27.	‘19.3.12.	”	EEE	468-8
”	”	734	”	”	‘19.3.27.	‘19.4.3.	”	FFF	468
소계		4,437		-	-	-	-	-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이후 같은 필지에 AAA의 사용승낙을 받아 2019. 2. 27. CCC 외 2인이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한 2,048㎡와 2019. 3. 27. FFF이 신청한 734㎡ 대하여도 별도의 검토없이 허가제한면적을 초과하여 허가하는 등 총 6건의 농지전용허가(협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생산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하여 허가제한면적을 초과하여 총 4,437㎡의 농지가 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농지전용 허가와 관련된 법령 및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미구성 등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상주시 ㉠㉠㉠㉠과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1. 「상주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미구성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5. 12. 11.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여 상주시 ㉠㉠㉠㉠과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와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2020. 2. 25. 「상주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상주시 ㉠㉠㉠㉠과에서는 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 담당 부서장, 부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 담당 팀장 등 7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상주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상주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및 면제 절차 부적정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자에게 과태료 예고통지를 하고, 이에 불복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주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상주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는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 ㉠㉡㉢㉣㉤과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자동차 소유주로부터 의견진술서가 제출된 건에 대해 과태료를 감경(50%)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면제(100%)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주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제 기준 적용 시 형평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담당자 외 팀장 등 다수와 논의하여 판단·결정함으로써 감경 또는 면제 처분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및 면제 현황

(단위 : 건, 천 원)

연도	일반인						공무원					
	소계		감경		면제		소계		감경		면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24	14,066	29	496	295	13,570	29	1,210	0	0	29	1,210
2019	146	5,756	6	96	140	5,660	13	540	0	0	13	540
2020	64	2,326	11	176	53	2,150	5	200	0	0	5	200
2021	85	4,126	11	176	74	3,950	9	390	0	0	9	390
2022 (~4월)	29	1,858	1	48	28	1,810	2	80	0	0	2	80

그런데 상주시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19년 ~ 2022년 4월까지 총 353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처분하면서 「상주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정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담당자가 임의로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였다.

특히, 2019년 1월 ~ 2022년 4월까지 상주시청 소속 공무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예고통지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검토하면서 12건에 대해 「상주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별표]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상 “부득이한 사유¹¹⁾”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행정소송 관련 변호사 자문, 지출계산서 작성을 위한 은행방문 등 공무수행 중이었다는 사유로 합당한 증빙서류 없이 [표 2]와 같이 부당하게 과태료 면제 처분을 하였다.

[표 2] 상주시 공무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현황

(단위 : 원)

순번	위반일시	위반자	의견진술 주요내용	첨부서류	면제금액
	합 계				384,000
1	2019.03.27.	●●●●●●소	급수전 계량기관리, 사용료 체납관리		32,000
2	2019.05.28.	●●●●●●소	상수도응급복구작업		32,000
3	2019.11.01.	상주시장 (■과)	체납세징수독려	출장내역서	32,000
4	2019.12.03.	㉠㉠	민원관련 그늘막 수리	출장명령부, 카톡내용	32,000
5	2020.05.06.	●●●●●●소	계량기교체 및 상수도민원처리	출장내역서	32,000
6	2020.06.17.	상주시장 (■과)	불법광고물정비 및 노점상 단속	차량운행일지	32,000
7	2020.07.06.	㉠㉠	지출계산서 작성 위해 은행방문	출장내역서	32,000
8	2020.09.24.	㉠㉠	불법광고물 정비작업 현장점검 및 계도	출장내역서, 공무원증 사본	32,000

11) ①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②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③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④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 수행,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도난차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주차단속된 차량,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긴급자동차,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외교,영사,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행사주관 등 공공업무 수행)**, 차량고장,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순번	위반일시	위반자	의견진술 주요내용	첨부서류	면제금액
9	2021.02.25.	㉠㉠㉠	배수설비 설치신고 관련 현장확인	출장내역서, 공무원증 사본	32,000
10	2021.10.08.	㉠㉠㉠	행정소송 관련 변호사 자문	출장내역서, 공무원증 사본	32,000
11	2021.10.25.	㉠㉠㉠	행정소송관련 변호사 면담	대체휴무내역확인서, 공무원증 사본	32,000
12	2021.11.23.	●●●●●●●소	옥내누수 민원관련 점검	출장내역서, 차량운행일지	32,000

*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상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합당한 증빙서류 없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주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재선충병방제 절차 이행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상주시 ■■■■과에서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등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¹²⁾ 및 제13조의2에 따르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신청·신고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자는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처리를 하고,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제출된 서류가 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과에서는 산지전용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여부를 확인하여 벌채·굴취 대상 나무에 소나무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받아야 하고, 방제·처리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제출받아 적정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심사 후 승인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 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상주시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소나무류가 포함되어 있는 ●면 ●리 산63-1번지 외 2필지 등 총 5건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수허가자가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특히, ●면 ●리 산102-1번지 등 2건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19. 9. 2. 산림청)」에 따라 재선충병방제완료서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산지전용 등의 준공처리를 할 수 없음에도 준공검사 승인을 한 사실이 있다.

[표] 반출금지구역 내 재선충 방제 관련 절차 미이행 현황

일련 번호	수허가자	위치	반출금지 구역 내 소나무류 포함	재선충병 방제 계획서 제출	재선충병 방제 완료서 제출	심사 및 결과 통보	복구 준공 처리	비고
		합계	5건	5건	0	0	2건	
1	상주시장 (●●과)	●면 ●리 산63-1번지 외 2필지	○	○	X	X	X	
2	●●●	●면 ●리 산102-1번지	○	○	X	X	○	
3	상주시장 ( 과장)	●면 ●리 산2번지 외 3필지	○	○	X	X	○	
4	 ○○○○○○○○ ○○○○지원	●면 ●리 산164-62번지 외 4필지	○	○	X	X	X	
5	 ○○○○○○○○ ○○○○지원	●면 ●리 산89번지 외 6필지	○	○	X	X	X	

※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상주시 ■■■■■과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제공업 등에 대한 인·허가, 지도·감독,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청소년 출입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 따라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와 청소년의 출입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10일의 영업정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을 때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 및 「게임산업 법령 실무편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공동발행, 2020. 12.)」에 따르면 영업의 폐지에 따른 폐업 신고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가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는 폐업 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과에서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 1] 과 같이 ○○경찰서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 및 처리결과에 대한 공문 통보를 받고 영업정지 등의 적절한 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PC와 ㉡㉡PC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PC방의 경우에는 ○○경찰서로부터 법령 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받고 약 6개월을 경과하여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만 한 후 실제 처분은 하지 않았다.

또한 ㉣㉣㉣PC의 경우 ○○경찰서로부터 2021. 10. 21. 법령 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받고 2021. 10. 25.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대표자 ㉤㉤㉤로부터 폐업신고를 받아 2021. 10. 27. 신고를 수리하였다. 그 후 75일이 경과된 2022. 1. 10.에 동일 장소인 ○○시 ●로 123에서 동일한 대표자 ㉤㉤㉤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신규등록 신청을 하였음에도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 승계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1]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내역

업소명	경찰통보일	위반내용	처분기준	검찰처분 결과	비고
㉠㉠PC방	2020.5.28.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영업정지 10일	기소유예 (2020.6.3.)	사전통지만 이행 (2020.12.1.)
㉡㉡PC	2021.11.11.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영업정지 10일	보완수사요구 결정(○○경찰서) (2022.1.6.)	처분 미이행
㉢㉢PC	2021.12.17. 2022.1.14.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제공	영업정지 10일	구약식 청구 (2022.2.25.)	처분 미이행
㉣㉣㉣PC	2021.10.21.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영업정지 1개월	구약식 벌금500만원 확정 (2021.11.25.)	사전통지만 이행 (2021.10.25.)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신속히 영업정지 등의 적절한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하수 개발 관련 신고대상 사후관리 소홀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상주시 ●●●●과에서는 「지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하수 개발 허가·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하수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는 시장에게 준공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알리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 제2호 및 시행령 제44조 [별표 7]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준공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한 자가 그 지하수의 개발 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하거나, 수질 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제9조의3에 따라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고, 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40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지하수법」에 따라 인·허가된 시설에 대해서는 허

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 허가취소 및 효력 상실을 안내하여야 하고 준공 신고 및 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대상(상주시 사전감사 자료) 1,650개소 중 [표 1]과 같이 ○○시 ㄱ면 ㄴ리 168번지 등 168개소는 신고 후 3개월 이상 미개발 상태임에도 허가취소 및 효력 상실 등을 신고자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표 2]와 같이 ○○시 ㄷ면 ㄹ리 1219번지 등 167개소는 준공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개발 후 지하수를 준공신고 없이 이용하는지 여부 및 개발 진행 중인지 여부 등을 파악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두는 등 지하수 개발 신고대상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방치하였다.

또한 [표 3]과 같이 ○○시 ㄱ면 ㄴ리 1166번지 등 40개소는 지하수량 부족 및 수질 불량 등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대상임에도 종료 신고토록 안내하거나 종료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40개소) 부과 등의 후속 조치 없이 방치하여 지하수 개발 신고대상 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1] 지하수 개발 신고 후 취하 예정 대상

연번	구분	허가신고일	개발자	개발위치	지하수용도	비고
1	신고	20190705	AAA	Ⓢ도 Ⓢ시 Ⓢ면 Ⓢ리 168번지	농·어업용	
2	신고	20200608	BBB	○도 ○시 ○면 ○리 320번지	농·어업용	
3	신고	20200713	CCC	●도 ●시 ●면 ●리 92번지	농·어업용	
4	신고	20191115	DDD	○도 ○시 ○면 ○리 719번지 1호	농·어업용	
5	신고	20210312	EEE	◁도 ▷시 ▷면 ▷리 780번지	농·어업용	
6	신고	20190329	FFF	◆도 ◆시 ◆면 ◆리 304번지	농·어업용	
7	신고	20191122	GGG	●도 ●시 ●동 316번지	농·어업용	
8	신고	20190712	HHH	◁도 ▷시 ▷면 ▷리 883번지	농·어업용	
9	신고	20190328	III	◁도 ▷시 ▷면 ▷리 61번지	농·어업용	
10	신고	20190328	JJJ	▷도 ▷시 ▷동 424번지 57호	농·어업용	
11	신고	20190712	KKK	▶도 ▶시 ▶동 248번지	농·어업용	
12	신고	20210304	LLL	■도 ■시 ●면 ●리 239번지 4호	농·어업용	
13	신고	20190124	MMM	□도 □시 □면 □리 1491번지	농·어업용	
14	신고	20211215	NNN	▣도 ▣시 ▣면 ▣리 717번지	농·어업용	
15	신고	20201119	OOO	㊦도 ㊦시 ㊦동 425번지	농·어업용	
16	신고	20210412	PPP	⊠도 ⊠시 ⊠동 1번지 57호	농·어업용	

연번	구분	허가신고일	개발자	개발위치	지하수용도	비고
17	신고	20210128	QQQ	A도 A시 A동 593번지 11호	농·어업용	
18	신고	20210414	RRR	B도 B시 B면 B리 725번지	농·어업용	
19	신고	20200123	SSS	C도 C시 C면 C리 928번지 1호	농·어업용	
20	신고	20210216	TTT	D도 D시 D동 638번지 3호	농·어업용	
21	신고	20190712	UUU	E도 E시 E동 222번지 2호	농·어업용	
22	신고	20210406	VVV	F도 F시 F면 F리 677번지 1호	농·어업용	
23	신고	20210917	WWW	G도 G시 G면 G리 21번지 1호	농·어업용	
24	신고	20210312	XXX	H도 H시 H동 416번지	농·어업용	
25	신고	20210412	YYY	I도 I시 I동 614번지	농·어업용	
26	신고	20210608	ZZZ	J도 J시 J면 J리 54번지 3호	농·어업용	
27	신고	20190329	○○○	K도 K시 K동 73번지 2호	농·어업용	
28	신고	20200220	■■■	L도 L시 L동 68번지 1호	농·어업용	
29	신고	20211220	□□□	M도 M시 M면 M리 747번지	농·어업용	
30	신고	20190510	○○○	N도 N시 N면 N리 1250번지	농·어업용	
31	신고	20210217	▣▣▣	O도 O시 O면 O리 599번지	농·어업용	
32	신고	20211109	▤▤▤	P도 P시 P면 P리 13번지	농·어업용	
33	신고	20190724	▥▥▥	Q도 Q시 Q면 Q리 1559번지	농·어업용	
34	신고	20211208	▧▧▧	R도 R시 R면 R리 44번지	농·어업용	
35	신고	20210701	▨▨▨	S도 S시 S면 S리 230번지	생활용	
36	신고	20210726	▩▩▩	T도 T시 T면 T리 158번지 1호	농·어업용	
37	신고	20211206	░░░	U도 U시 U면 U리 617번지 3호	농·어업용	
38	신고	20190613	▤▤▤	V도 V시 V면 V리 346번지	농·어업용	
39	신고	20190326	▥▥▥	X도 X시 X면 X리 987번지	생활용	
40	신고	20200618	▧▧▧▧	Y도 Y시 Y면 Y리 34번지	공업용	
41	신고	20190225	□□□	Z도 Z시 Z면 Z리 45번지 29호	농·어업용	
42	신고	20190514	▣▣▣	ㄱ도 ㄱ시 ㄱ면 ㄱ리 182번지 10호	농·어업용	
43	신고	20191202	▤▤▤	ㄴ도 ㄴ시 ㄴ면 ㄴ리 544번지	농·어업용	
44	신고	20210129	▥▥▥	ㄷ도 ㄷ시 ㄷ면 ㄷ리 240번지 3호	농·어업용	
45	신고	20210825	▧▧▧	ㄹ도 ㄹ시 ㄹ면 ㄹ리 98번지 20호	농·어업용	
46	신고	20191106	▨▨▨	ㅁ도 ㅁ시 ㅁ면 ㅁ리 343번지	농·어업용	
47	신고	20201217	▩▩▩	ㅂ도 ㅂ시 ㅂ면 ㅂ리 677번지	농·어업용	
48	신고	20191203	▪▪▪	ㅅ도 ㅅ시 ㅅ면 ㅅ리 409번지	농·어업용	
49	신고	20210408	▫▫▫	ㅇ도 ㅇ시 ㅇ면 ㅇ리 596번지	농·어업용	
50	신고	20210107	▬▬▬	ㅈ도 ㅈ시 ㅈ면 ㅈ리 784번지	농·어업용	
51	신고	20211223	▭▭▭	ㅊ도 ㅊ시 ㅊ면 ㅊ리 840번지	농·어업용	
52	신고	20201124	▮▮▮	ㅌ도 ㅌ시 ㅌ면 ㅌ리 1478번지	농·어업용	
53	신고	20201211	▯▯▯	ㅍ도 ㅍ시 ㅍ동 420번지	농·어업용	
54	신고	20210309	▰▰▰	ㅎ도 ㅎ시 ㅎ면 ㅎ리 1824번지 17호	농·어업용	
55	신고	20200417	▱▱▱	㉠도 ㉠시 ㉠면 ㉠리 644번지 1호	농·어업용	
56	신고	20210528	▼▼▼	㉡도 ㉡시 ㉡면 ㉡리 723번지 2호	농·어업용	
57	신고	20201102	▽▽▽	㉢도 ㉢시 ㉢면 ㉢리 524번지 1호	농·어업용	
58	신고	20200928	▼▼▼	◆도 ◆시 ◆면 ◆리 269번지	농·어업용	
59	신고	20210521	▽▽▽	◀도 ▶시 ▶동 491번지 5호	생활용	
60	신고	20201028	◀◀◀	◁도 ▷시 ▷읍 ▷리 434번지	농·어업용	
61	신고	20200303	◁◁◁	◄도 ►시 ►면 ►리 828번지	농·어업용	
62	신고	20210126	◄◄◄	◄도 ◄시 ◄면 ◄리 1844번지	농·어업용	
63	신고	20210702	◄◄◄	▀도 ▀시 ▀면 ▀리 500번지 6호	농·어업용	
64	신고	20210304	◄◄◄	▮도 ▮시 ▮동 808번지 1호	농·어업용	
65	신고	20201111	◄◄◄	▯도 ▯시 ▯동 5번지 18호	생활용	
66	신고	20210513	◆◆◆	□도 □시 □동 491번지 5호	생활용	
67	신고	20210106	◇◇◇	■도 ■시 ■면 ■리 222번지	농·어업용	
68	신고	20201125	◆◆◆	△도 △시 △면 △리 1152번지 3호	농·어업용	
69	신고	20210309	◎◎◎	■도 ■시 ■면 ■리 1817번지 5호	농·어업용	
70	신고	20200629	◇◇◇	■도 ■시 ■면 □리 565번지 1호	농·어업용	
71	신고	20210315	○○○	◎도 ◎시 ◎면 ◎리 352번지 5호	농·어업용	
72	신고	20211223	○○○	■도 ■시 ▀면 ▀리 126번지 5호	농·어업용	
73	신고	20200219	⊙⊙⊙	⊟도 ⊟시 ▶면 ▶리 210번지 2호	농·어업용	

연번	구분	허가신고일	개발자	개발위치	지하수용도	비고
74	신고	20210304	○○○○	○도 ○시 ○동 480번지	농·어업용	
75	신고	20200113	●●●●	○도 ○시 ○면 ○리 338번지	농·어업용	
76	신고	20200224	○●○●	●도 ●시 ●동 348번지 3호	농·어업용	
77	신고	20211015	●●●●	□도 □시 □면 □리 1840번지 12호	농·어업용	
78	신고	20210406	●●●●	●도 ●시 ●면 ●리 147번지 1호	농·어업용	
79	신고	20210315	●●●●	■도 ■시 ■읍 ■리 675번지 4호	농·어업용	
80	신고	20211005	●●●●	▣도 ▣시 ▣면 ▣리 383번지	농·어업용	
81	신고	20200501	●●●●	⊠도 ⊠시 ⊠면 ⊠리 546번지 2호	농·어업용	
82	신고	20210414	□□□□	▣도 ▣시 ▣면 ▣리 1373번지 3호	농·어업용	
83	신고	20200211	●●●●	■도 ■시 ■면 ■리 500번지	농·어업용	
84	신고	20201014	○●○●	▣도 ▣시 ▣면 ▣리 587번지	생활용	
85	신고	20210421	○●○●	□도 □시 □면 □리 268번지 5호	농·어업용	
86	신고	20210322	○●○●	○도 ○시 ○면 ○리 438번지 3호	농·어업용	
87	신고	20210304	●●●●	◆도 ◆시 ◆면 ◆리 567번지 2호	농·어업용	
88	신고	20200630	▲▲▲▲	◆도 ◆시 ◆동 64번지 8호	생활용	
89	신고	20200323	■□■□	△도 △시 △동 12번지 6호	농·어업용	
90	신고	20201203	■□■□	◇도 ◇시 ◇면 ◇리 706번지 1호	농·어업용	
91	신고	20200326	□□□□	⊠도 ⊠시 ⊠동 688번지 1호	농·어업용	
92	신고	20201030	▲▲▲▲	○도 ○시 ○면 ○리 1817번지 4호	농·어업용	
93	신고	20200929	□□□□	○도 ○시 ○동 121번지 1호	농·어업용	
94	신고	20200220	▲▲▲▲	○도 ○시 ○면 ○리 1799번지	농·어업용	
95	신고	20210309	△△△△	▣도 ▣시 ▣면 ▣리 269번지	농·어업용	
96	신고	20210415	▲▲▲▲	▷도 ▷시 ▷읍 ▷리 54번지 2호	농·어업용	
97	신고	20210401	▲▲▲▲	○도 ○시 ○면 ○리 854번지 12호	농·어업용	
98	신고	20210414	▶▶▶▶	▣도 ▣시 ▣면 ▣리 416번지 3호	농·어업용	
99	신고	20190425	●●●●	▣도 ▣시 ▣동 672번지 34호	농·어업용	
100	신고	20190415	◇◇◇◇	■도 ■시 ■동 704번지 8호	농·어업용	
101	신고	20190822	○○○○	⊠도 ⊠시 ⊠읍 ⊠리 219번지 2호	농·어업용	
102	신고	20200306	○○○○	○도 ○시 ○면 ○리 168번지 1호	농·어업용	
103	신고	20190305	⊠⊠⊠⊠	▶도 ▶시 ▶면 ▶리 223번지 1호	농·어업용	
104	신고	20200206	○●○●	△도 △시 △면 △리 36번지	농·어업용	
105	신고	20211118	◆◆◆◆	△도 △시 △면 △리 535번지	농·어업용	
106	신고	20200117	▣▣▣▣	□도 □시 □읍 □리 439번지	농·어업용	
107	신고	20210928	◆◆◆◆	□도 □시 □면 □리 1016번지	농·어업용	
108	신고	20210820	◆◆◆◆	○도 ○시 ○면 ○리 68번지	농·어업용	
109	신고	20191216	◆◆◆◆	●도 ●시 ●동 1번지 3호	생활용	
110	신고	20190403	◆◆◆◆	○도 ○시 ○면 ○리 1442번지 8호	농·어업용	
111	신고	20210524	◆◆◆◆	□도 □시 □면 □리 984번지	농·어업용	
112	신고	20210209	●●●●	○도 ○시 ○면 ○리 392번지	농·어업용	
113	신고	20201229	●●●●	○도 ○시 ○면 ○리 748번지 1호	농·어업용	
114	신고	20210413	○●○●	○도 ○시 ○면 ○리 75번지	농·어업용	
115	신고	20201030	●●●●	□도 □시 □면 □리 516번지 1호	농·어업용	
116	신고	20211108	□□□□	○도 ○시 □면 ○리 502번지 4호	농·어업용	
117	신고	20210917	○●○●	○도 □시 ○면 □리 1452번지	농·어업용	
118	신고	20210408	○●○●	○도 ■시 ■면 ○리 52번지 1호	농·어업용	
119	신고	20190321	□□□□	▣도 ○시 ▣면 ○리 27번지 2호	농·어업용	
120	신고	20210209	□□□□	○도 ■시 ○면 ▣리 942번지 2호	농·어업용	
121	신고	20190612	■□■□	▣도 ▣시 ▣면 ▣리 574번지 2호	농·어업용	
122	신고	20211104	▣▣▣▣	◆도 ◆시 ◆동 660번지	농·어업용	
123	신고	20210707	▣▣▣▣	▣도 ▣시 ▣면 ▣리 716번지 1호	생활용	
124	신고	20201229	▣▣▣▣	■도 ■시 ○면 ○리 585번지	농·어업용	
125	신고	20210913	▣▣▣▣	⊠도 ⊠시 ⊠면 ⊠리 478번지 2호	생활용	
126	신고	20211021	▣▣▣▣	○도 ○시 ○면 ○리 255번지	생활용	
127	신고	20210429	●●●●	▣도 ▣시 ▣면 ▣리 624번지 5호	농·어업용	
128	신고	20211124	●●●●	○도 ○시 ○면 ○리 222번지 1호	농·어업용	
129	신고	20201027	●●●●	○도 ○시 ○면 ○리 482번지	농·어업용	
130	신고	20210527	●●●●	○도 ○시 ○면 ○리 49번지 1호	농·어업용	

연번	구분	허가신고일	개발자	개발위치	지하수용도	비고
131	신고	20210121	●○○●	■도 ■시 ●읍 ●리 840번지	농·어업용	
132	신고	20190408	■■■■	■도 ■시 ■면 ■리 945번지	농·어업용	
133	신고	20201211	●●●	●도 ●시 ●면 ●리 387번지 2호	농·어업용	
134	신고	20210330	●●●	■도 ■시 ●동 95번지	농·어업용	
135	신고	20211109	□□□	■도 ■시 ■면 ■리 17번지	농·어업용	
136	신고	20211117	○○○	▽도 ▽시 ▽면 ▽리 128번지 6호	농·어업용	
137	신고	20210707	◆◆◆	◆도 ◆시 ●면 ●리 61번지	생활용	
138	신고	20210107	□□□	●도 ●시 ●동 141번지 2호	농·어업용	
139	신고	20200316	◆◆◆	□도 □시 ●면 ●리 297번지 1호	생활용	
140	신고	20210421	◆◆◆	●도 ●시 □면 □리 238번지 1호	농·어업용	
141	신고	20190416	◆◆◆	●도 ●시 ●면 ●리 337번지	농·어업용	
142	신고	20210121	◆◆◆	◆도 ◆시 ◆동 468번지 12호	농·어업용	
143	신고	20210209	◆◆◆	△도 △시 △동 418번지 6호	농·어업용	
144	신고	20210218	●●●	◆도 ◆시 ●면 ●리 626번지	농·어업용	
145	신고	20190613	▽▽▽	●도 ●시 ◆면 ◆리 270번지	농·어업용	
146	신고	20210210	▽▽▽	▽도 ▽시 ▽면 ▽리 494번지	농·어업용	
147	신고	20190612	●●●	●도 ●시 ●면 ●리 433번지	농·어업용	
148	신고	20211117	□□□	●도 ▽시 ●면 ▽리 116번지	농·어업용	
149	신고	20200319	●●●	●도 ●시 ●동 568번지	생활용	
150	신고	20210317	●●●	●도 ●시 ●면 ●리 807번지 2호	농·어업용	
151	신고	20211108	●●●	□도 □시 ●면 ●리 982번지	농·어업용	
152	신고	20201229	●●●	●도 ●시 ●면 ●리 165번지	농·어업용	
153	신고	20200703	□□□	□도 □시 □동 374번지	농·어업용	
154	신고	20211124	□□□	●도 ●시 ●면 ●리 1367번지	생활용	
155	신고	20201208	■□□	●도 ●시 ■면 ■리 925번지	농·어업용	
156	신고	20211223	■□□	■도 ■시 ●면 ●리 517번지 1호	생활용	
157	신고	20211111	■□□	●도 ●시 ■면 ■리 20번지 1호	농·어업용	
158	신고	20211223	■□□	●도 ●시 ●동 504번지	농·어업용	
159	신고	20211228	■□□	●도 ●시 ●면 ●리 177번지	농·어업용	
160	신고	20200511	■□□	■도 ■시 ●읍 ●리 96번지	농·어업용	
161	신고	20200302	●●●	●도 ●시 □면 □리 781번지 1호	농·어업용	
162	신고	20200423	●●●	●도 ●시 ●면 ●리 457번지	농·어업용	
163	신고	20210525	●●●	■도 ■시 ■동 4번지	농·어업용	
164	신고	20190320	●●●	■도 ■시 ●면 ●리 454번지	농·어업용	
165	신고	20200330	●●●	◆도 ◆시 ●면 ●리 473번지 2호	농·어업용	
166	신고	20190523	□□□	●도 ●시 ■면 ■리 401번지	생활용	
167	신고	20200306	●●●	●도 ●시 ◆면 ◆리 800번지	농·어업용	
168	신고	20210309	●●●	●도 ●시 ●면 ●리 224번지	농·어업용	

※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지하수 개발 신고 후 준공 예정 대상

연번	구분	허가신고일	개발자	개발위치	지하수용도	비고
1	신고	20210111	○○○	▲도 ▲시 ▲면 ▲리 1219번지	농·어업용	
2	신고	20200902	□□□□	△도 △시 △면 △리 98번지	생활용	
3	신고	20211123	●●●	●도 ●시 ●면 ●리 873번지	농·어업용	
4	신고	20200220	■●●	▲도 ▲시 ▲면 ▲리 17번지	농·어업용	
5	신고	20211015	○○○	■도 ■시 ■면 ■리 220번지	농·어업용	
6	신고	20211028	□ □ □	■도 ■시 ■면 ■리 1680번지	농·어업용	
7	신고	20211111	●●●	□도 □시 □면 □리 549번지	농·어업용	
8	신고	20190909	●●●	■도 ■시 ■동 543번지 4호	공업용	
9	신고	20190712	●●●	■도 ■시 ●면 ●리 216번지	농·어업용	
10	신고	20190712	●●●	▲도 ▲시 ▲동 107번지 31호	농·어업용	
11	신고	20190520	●●●	△도 △시 △면 △리 444번지 10호	농·어업용	
12	신고	20190328	▲▲▲	▶도 ▶시 ▶면 ▶리 526번지	농·어업용	
13	신고	20201209	■□□	◇도 ◇시 ◇읍 ◇리 462번지 4호	농·어업용	
14	신고	20211215	■□□	○도 ○시 ○면 ○리 674번지	농·어업용	
15	신고	20211117	□ □ □	○도 ○시 ○면 ○리 225번지	농·어업용	
16	신고	20211118	■ ■ ■	⊙도 ⊙시 ⊙면 ⊙리 16번지	농·어업용	
17	신고	20210330	□ □ □	◎도 ◎시 ◎면 ◎리 365번지	농·어업용	
18	신고	20210513	▲▲▲	◆도 ◆시 ◆면 ◆리 622번지	농·어업용	
19	신고	20201007	△△△	⊠도 ⊠시 ⊠면 ⊠리 4번지	농·어업용	
20	신고	20211209	▲ ▲ ▲	◆도 ◆시 ◆면 ◆리 27번지	농·어업용	
21	신고	20211126	△ △ △	◇도 ◇시 ◇면 ◇리 1131번지 4호	농·어업용	
22	신고	20201211	▶▶▶	◆도 ◆시 ◆면 ◆리 343번지 1호	농·어업용	
23	신고	20191227	●●●	◇도 ◇시 ◇면 ◇리 328번지	농·어업용	
24	신고	20211220	◇◇◇	●도 ●시 ●면 ●리 216번지	농·어업용	
25	신고	20210903	○○○	●도 ●시 ●면 ●리 83번지	농·어업용	
26	신고	20201204	○○○	■도 ■시 ■동 290번지	농·어업용	
27	신고	20201209	⊙⊙⊙	◎도 ◎시 ◎면 ◎리 760번지 80호	농·어업용	
28	신고	20200221	◎◎◎	□도 □시 □면 □리 132번지 3호	생활용	
29	신고	20190723	◆◆◆	●도 ●시 ●면 ●리 548번지 7호	농·어업용	
30	신고	20200630	⊠⊠⊠	●도 ●시 ●면 ●리 783번지 1호	농·어업용	
31	신고	20200213	●●●	□도 □시 □동 755번지	농·어업용	
32	신고	20211018	●●●	○도 ○시 ○면 ○리 649번지 7호	농·어업용	
33	신고	20211124	●●●	⊙도 ⊙시 ⊙면 ⊙리 989번지 2호	농·어업용	
34	신고	20200827	■●●	◎도 ◎시 ◎면 ◎리 908번지	농·어업용	
35	신고	20210507	○○○	◆도 ◆시 ◆면 ◆리 211번지 1호	농·어업용	
36	신고	20200511	□ □ □	⊠도 ⊠시 ⊠면 ⊠리 203번지 14호	생활용	
37	신고	20210506	●●●	◆도 ◆시 ◆면 ◆리 211번지 1호	생활용	
38	신고	20211215	●●●	◇도 ◇시 ◇면 ◇리 194번지	농·어업용	
39	신고	20210825	○○○	◇도 ◇시 ◇면 ◇리 634번지	농·어업용	
40	신고	20200527	(주)○○○○	◇도 ◇시 ◇면 ◇리 52번지 2호	생활용	
41	신고	20211111	⊠⊠⊠	◆도 ◆시 ◆면 ◆리 414번지	농·어업용	
42	신고	20210712	●●●	●도 ●시 ●동 19번지 2호	농·어업용	
43	신고	20210928	●●●	●도 ●시 ●동 313번지 1호	농·어업용	
44	신고	20200331	●●●	◎도 ◎시 ◎면 ◎리 301번지 2호	농·어업용	
45	신고	20211008	■●●	■도 ■시 ■면 ■리 151번지 19호	농·어업용	
46	신고	20200608	○○○	□도 □시 □면 □리 211번지	농·어업용	
47	신고	20211215	□ □ □	●도 ●시 ●면 ●리 31번지	농·어업용	
48	신고	20211124	●●●	●도 ●시 ●동 237번지 2호	농·어업용	
49	신고	20211206	●●●	■도 ■시 ■면 ■리 141번지	농·어업용	
50	신고	20211229	●●●	⬜도 ⬜시 ⬜면 ⬜리 247번지 1호	농·어업용	
51	신고	20210903	▲▲▲	⬜도 ⬜시 ⬜면 ⬜리 407번지	농·어업용	
52	신고	20210419	■□□	⊠도 ⊠시 ⊠면 ⊠리 746번지 10호	농·어업용	
53	신고	20210329	■□□	⊠도 ⊠시 ⊠면 ⊠리 245번지	농·어업용	
54	신고	20200618	□ □ □	⊠도 ⊠시 ⊠면 ⊠리 716번지	농·어업용	
55	신고	20210928	■ ■ ■	●도 ●시 ●면 ●리 241번지 1호	농·어업용	
56	신고	20201218	□ □ □	●도 ●시 ●면 ●리 722번지 7호	농·어업용	

연번	구분	허가신고일	개발자	개발위치	지하수용도	비고
57	신고	20211124	▲▲▲▲	○도 ○시 ○동 525번지 1호	농·어업용	
58	신고	20210819	△△△△	㉔도 ㉔시 ㉔면 ㉔리 506번지 9호	농·어업용	
59	신고	20200423	●●●●	■도 ■시 ■면 ■리 121번지 1호	농·어업용	
60	신고	20200713	▲▲▲▲	■도 ■시 ■면 ■리 766번지 10호	농·어업용	
61	신고	20200108	■□□□	□도 □시 □면 □리 316번지 1호	농·어업용	
62	신고	20211111	■□□□	●도 ●시 ●면 ●리 419번지	농·어업용	
63	신고	20211018	□□□□	○도 ○시 ○면 ○리 1011번지	농·어업용	
64	신고	20201120	■□□□	○도 ○시 ○면 ○리 106번지	농·어업용	
65	신고	20210531	□□□□	○도 ○시 ○면 ○리 329번지 1호	농·어업용	
66	신고	20210113	▲▲▲▲	●도 ●시 ●면 ●리 320번지	농·어업용	
67	신고	20200522	△△△△	■도 ■시 ■읍 ■리 283번지 3호	농·어업용	
68	신고	20210315	■□□□	■도 ■시 ■동 970번지	농·어업용	
69	신고	20190731	■□□□	□도 □시 □읍 □리 636번지 12호	농·어업용	
70	신고	20200131	□□□□	■도 ■시 ■면 ■리 234번지 5호	농·어업용	
71	신고	20200501	■□□□	□도 □시 □동 161번지	생활용	
72	신고	20210524	□□□□	▲도 ▲시 ▲면 ▲리 113번지 1호	농·어업용	
73	신고	20210625	▲▲▲▲	△도 △시 △면 △리 503번지	농·어업용	
74	신고	20210720	△△△△	▲도 ▲시 ▲면 ▲리 446번지	생활용	
75	신고	20190612	▲▲▲▲	▲도 ▲시 ▲면 ▲리 57번지	생활용	
76	신고	20210531	▲▲▲▲	▶도 ▶시 ▶면 ▶리 195번지	농·어업용	
77	신고	20190626	▶▶▶▶	◎도 ◎시 ◎면 ◎리 864번지	농·어업용	
78	신고	20200827	◎◎◎◎	◇도 ◇시 ◇읍 ◇리 812번지 2호	농·어업용	
79	신고	20200421	◇◇◇◇	○도 ○시 ○읍 ○리 572번지 4호	농·어업용	
80	신고	20211026	○○○○	⓪도 ⓪시 ⓪면 ⓪리 77번지	농·어업용	
81	신고	20200219	○○○○	⓪도 ⓪시 ⓪면 ⓪리 456번지	농·어업용	
82	신고	20190419	⓪⓪⓪⓪	◆도 ◆시 ◆면 ◆리 202번지 2호	농·어업용	
83	신고	20210726	⓪⓪⓪⓪	⓪도 ⓪시 ⓪면 ⓪리 14번지	농·어업용	
84	신고	20191101	◆◆◆◆	●도 ●시 ●동 21번지 11호	생활용	
85	신고	20190321	⓪⓪⓪⓪	■도 ■시 ■면 ■리 798번지 5호	농·어업용	
86	신고	20211108	◆◆◆◆	■도 ■시 ■면 ■리 160번지 1호	농·어업용	
87	신고	20200206	◆◆◆◆	□도 □시 □면 □리 404번지 1호	농·어업용	
88	신고	20200511	◆◆◆◆	●도 ●시 ●면 ●리 54번지 1호	농·어업용	
89	신고	20200227	◆◆◆◆	○도 ○시 ○면 ○리 842번지	농·어업용	
90	신고	20210323	◆◆◆◆	⓪도 ⓪시 ⓪면 ⓪리 1043번지 1호	농·어업용	
91	신고	20190419	●●●●	●도 ●시 ●면 ●리 1785번지 4호	농·어업용	
92	신고	20190320	●●●●	●도 ●시 ●면 ●리 472번지	농·어업용	
93	신고	20190305	●●●●	○도 ○시 ○면 ○리 486번지 2호	농·어업용	
94	신고	20201028	●●●●	■도 ■시 ■면 ■리 407번지	농·어업용	
95	신고	20200417	□□□□	□도 □시 □읍 □리 347번지 1호	농·어업용	
96	신고	20210223	●●●●	◆도 ◆시 ◆면 ◆리 1806번지 9호	농·어업용	
97	신고	20190507	●●●●	◆도 ◆시 ◆면 ◆리 541번지	농·어업용	
98	신고	20200421	□□□□	◇도 ◇시 ◇읍 ◇리 217번지 1호	농·어업용	
99	신고	20190430	□□□□	◇도 ◇시 ◇면 ◇리 1756번지 1호	농·어업용	
100	신고	20200106	■□□□	⓪도 ⓪시 ⓪면 ⓪리 647번지	농·어업용	
101	신고	20200211	■□□□	●도 ●시 ●면 ●리 1137번지	농·어업용	
102	신고	20210223	■□□□	○도 ○시 ○면 ○리 71번지	농·어업용	
103	신고	20190718	■□□□	■도 ■시 ■면 ■리 496번지 1호	농·어업용	
104	신고	20190305	■□□□	■도 ■시 ■면 ■리 701번지 1호	농·어업용	
105	신고	20190419	■□□□	■도 ■시 ■면 ■리 305번지	농·어업용	
106	신고	20200310	●●●●	⓪도 ⓪시 ⓪면 ⓪리 773번지	농·어업용	
107	신고	20200511	●●●●	◆도 ◆시 ◆읍 ◆리 171번지 7호	농·어업용	
108	신고	20200924	●●●●	◆도 ◆시 ◆면 ◆리 443번지 2호	농·어업용	
109	신고	20201016	■□□□	◆도 ◆시 ◆면 ◆리 443번지 2호	농·어업용	
110	신고	20190409	◆◆◆◆	♠도 ♠시 ♠면 ♠리 139번지	농·어업용	
111	신고	20200416	◆◆◆◆	♠도 ♠시 ♠동 25번지 1호	농·어업용	
112	신고	20211229	◆◆◆◆	♡도 ♡시 ♡면 ♡리 896번지	농·어업용	
113	신고	20190409	◆◆◆◆	♥도 ♥시 ♥읍 ♥리 125번지 2호	농·어업용	

연번	구분	허가신고일	개발자	개발위치	지하수용도	비고
114	신고	20190619	◆◆◆	◁도 ▷시 ▷동 249번지	농·어업용	
115	신고	20200317	▽▽▽	◁도 ▷시 ▷면 ▷리 518번지 1호	농·어업용	
116	신고	20200323	▽▽▽	▷도 ▷시 ▷동 122번지 3호	농·어업용	
117	신고	20200406	●●●	▷도 ▷시 ▷읍 ▷리 91번지	농·어업용	
118	신고	20190312	□□□	♠도 ♠시 ♠읍 ♠리 18번지 3호	생활용	
119	신고	20200117	●●●	♠도 ♠시 ♠읍 ♠리 446번지	농·어업용	
120	신고	20190312	●●●	♡도 ♡시 ♡면 ♡리 258번지 6호	농·어업용	
121	신고	20210423	●●●	♥도 ♥시 ♥면 ♥리 679번지	농·어업용	
122	신고	20210423	●●●	♣도 ♣시 ♣면 ♣리 148번지	농·어업용	
123	신고	20200317	●●●	♣도 ♣시 ♣면 ♣리 955번지	농·어업용	
124	신고	20210506	▲▲▲	◆도 ◆시 ◆면 ◆리 653번지	농·어업용	
125	신고	20210423	▲▲▲	◎도 ◎시 ◎면 ◎리 551번지	농·어업용	
126	신고	20200117	□□□	▣도 ▣시 ▣읍 ▣리 574번지 7호	농·어업용	
127	신고	20190419	▲▲▲	●도 ●시 ●면 ●리 695번지 9호	농·어업용	
128	신고	20200417	△△△	●도 ●시 ●면 ●리 296번지 1호	농·어업용	
129	신고	20200511	▣▣▣	▣도 ▣시 ▣면 ▣리 192번지 4호	농·어업용	
130	신고	20201030	▣▣▣	▣도 ▣시 ▣면 ▣리 213번지 6호	농·어업용	
131	신고	20190619	▣▣▣	▣도 ▣시 ▣면 ▣리 773번지	농·어업용	
132	신고	20190312	◆◆◆	▣도 ▣시 ▣면 ▣리 756번지	농·어업용	
133	신고	20211104	◆◆◆	▣도 ▣시 ▣면 ▣리 334번지	농·어업용	
134	신고	20190312	◆◆◆	▣도 ▣시 ▣면 ▣리 359번지	농·어업용	
135	신고	20200416	◆◆◆	☆도 ☆시 ☆동 308번지 4호	농·어업용	
136	신고	20190304	◆◆◆	★도 ★시 ★면 ★리 402번지	농·어업용	
137	신고	20190409	□□□	○도 ○시 ○면 ○리 809번지	농·어업용	
138	신고	20210928	▲▲▲	●도 ●시 ●면 ●리 208번지	생활용	
139	신고	20210812	△△△	◎도 ◎시 ◎면 ◎리 319번지 1호	생활용	
140	신고	20211006	○○○	◇도 ◇시 ◇면 ◇리 642번지 1호	농·어업용	
141	신고	20200421	▣▣▣▣	◆도 ◆시 ◆면 ◆리 775번지	생활용	
142	신고	20200302	◆◆◆	□도 □시 □면 □리 547번지	농·어업용	
143	신고	20190902	▣▣▣	■도 ■시 ■면 ■리 1925번지	농·어업용	
144	신고	20211220	●●●	△도 △시 △면 △리 177번지	농·어업용	
145	신고	20190308	●●●	▲도 ▲시 ▲면 ▲리 67번지	농·어업용	
146	신고	20190530	●●●	▽도 ▽시 ▽면 ▽리 산 131번지	농·어업용	
147	신고	20211215	●●●	▼도 ▼시 ▼면 ▼리 263번지 2호	농·어업용	
148	신고	20211117	●●●	◁도 ▷시 ▷면 ▷리 878번지	농·어업용	
149	신고	20210420	□□□	◁도 ▷시 ▷면 ▷리 163번지 1호	농·어업용	
150	신고	20201231	●●●	◁도 ▷시 ▷면 ▷리 1002번지 1호	농·어업용	
151	신고	20210113	○●○	◁도 ▷시 ▷면 ▷리 778번지	농·어업용	
152	신고	20210311	○○(주)	◁도 ▷시 ▷면 ▷리 335번지	생활용	
153	신고	20190319	◆◆◆	◁도 ▷시 ▷면 ▷리 334번지 1호	농·어업용	
154	신고	20211206	◆◆◆	◆도 ◆시 ◆면 ◆리 25번지 10호	농·어업용	
155	신고	20210928	◆◆◆	◇도 ◇시 ◇면 ◇리 90번지	농·어업용	
156	신고	20211018	◆◆◆	◇도 ◇시 ◇면 ◇리 233번지 1호	농·어업용	
157	신고	20210303	●●●	◆도 ◆시 ◆면 ◆리 431번지	농·어업용	
158	신고	20200316	●●●	Ⓜ도 Ⓜ시 Ⓜ면 Ⓜ리 741번지 3호	농·어업용	
159	신고	20200703	□□□	◎도 ◎시 ◎면 ◎리 4번지	농·어업용	
160	신고	20200102	▣▣▣▣	●도 ●시 ●읍 ●리 156번지 15호	농·어업용	
161	신고	20211108	○○○	▣도 ▣시 ▣면 ▣리 84번지	농·어업용	
162	신고	20210617	○○○	▣도 ▣시 ▣면 ▣리 264번지	생활용	
163	신고	20200701	ⓂⓂⓂ	▣도 ▣시 ▣읍 ▣리 475번지 1호	농·어업용	
164	신고	20211215	◎◎◎	▣도 ▣시 ▣면 ▣리 253번지	생활용	
165	신고	20210429	◆◆◆	Ⓜ도 Ⓜ시 Ⓜ면 Ⓜ리 858번지 14호	농·어업용	
166	신고	20190429	●●●	㉠도 ㉠시 ㉠면 ㉠리 35번지	농·어업용	
167	신고	20211228	▽▽▽	㉠도 ㉠시 ㉠면 ㉠리 764번지 1호	농·어업용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지하수 개발 종료 예정 대상

연번	구분	허가신고일	개발자	개발위치	지하수용도	비고
1	신고	20200117	○●○	▲도 ▲시 ▲면 ▲리 1166번지	농·어업용	
2	신고	20190712	●●●	▽도 ▽시 ▽면 ▽리 543번지	농·어업용	
3	신고	20201209	●●●	○도 ○시 ○동 1번지 80호	농·어업용	
4	신고	20190328	●●●	■도 ■시 ■면 ■리 169번지	농·어업용	
5	신고	20190311	●●●	○도 ○시 ○면 ○리 산 133번지	농·어업용	
6	신고	20201022	●●●	○도 ○시 ○면 ○리 821번지	농·어업용	
7	신고	20210720	□ □ □	■도 ■시 ■면 ■리 230번지 1호	농·어업용	
8	신고	20211126	●●●	◇도 ◇시 ◇면 ◇리 519번지	농·어업용	
9	신고	20210304	○●○	□도 □시 □면 □리 943번지 2호	농·어업용	
10	신고	20210405	●●●	▲도 ▲시 ▲면 ▲리 176번지	농·어업용	
11	신고	20200306	○●○	⊙도 ⊙시 ⊙면 ⊙리 1034번지 1호	농·어업용	
12	신고	20190308	●●●	▣도 ▣시 ○면 ○리 143번지	농·어업용	
13	신고	20190415	▲▲▲	○도 ◇시 ◇면 ○리 270번지	농·어업용	
14	신고	20210622	■●■	◇도 ○시 ○면 ◇리 257번지	농·어업용	
15	신고	20201111	■●■	○도 ○시 ▣면 ▣리 508번지 4호	농·어업용	
16	신고	20210128	□ □ □	○도 ○시 ○면 ○리 15번지	농·어업용	
17	신고	20190214	▲▲▲	○도 ○시 ◇면 ◇리 361번지 4호	농·어업용	
18	신고	20201022	◇◇◇	◆도 ◆시 ○면 ◇리 547번지	농·어업용	
19	신고	20190429	▲▲▲	◆도 ◆시 ○면 ○리 344번지	농·어업용	
20	신고	20210324	△△△	○도 ○시 ◆면 ◆리 113번지	농·어업용	
21	신고	20191106	▲ ▲ ▲	○도 ○시 ○면 ○리 1102번지 2호	농·어업용	
22	신고	20191107	△ △ △	○도 ○시 ◆면 ◆리 219번지 1호	농·어업용	
23	신고	20200316	▶▶▶	○도 ●시 ●면 ○리 790번지	농·어업용	
24	신고	20200416	○●○	●도 ○시 ○면 ●리 111번지	농·어업용	
25	신고	20190611	◇◇◇	○도 ○시 ○면 ○리 384번지 3호	농·어업용	
26	신고	20200306	○●○	○도 ○시 ■면 ■리 1010번지	농·어업용	
27	신고	20210107	○○○	○도 ○시 ▣면 ▣리 552번지 1호	생활용	
28	신고	20210218	⊙⊙⊙	▣도 ▣시 ○면 ○리 951번지 2호	농·어업용	
29	신고	20210312	○●○	○도 ○시 ○면 ○리 209번지	농·어업용	
30	신고	20190319	◆◆◆	○도 ○시 ○면 ○리 694번지 6호	농·어업용	
31	신고	20200316	▣▣▣	■도 ■시 ○면 ○리 1003번지	농·어업용	
32	신고	20210423	◇◇◇	○도 ○시 ◇면 ◇리 486번지	농·어업용	
33	신고	20200316	◇◇◇	○도 ○시 ○면 ○리 311번지 1호	농·어업용	
34	신고	20200807	◇◇◇	◆도 ◆시 ◆면 ◆리 446번지	농·어업용	
35	신고	20210615	◇◇◇	◇도 ◇시 ○면 ○리 293번지 1호	농·어업용	
36	신고	20191211	◇◇◇	○도 ○시 ◇면 ◇리 384번지 3호	농·어업용	
37	신고	20200511	●●●	◇도 ◇시 ○면 ○리 213번지 5호	농·어업용	
38	신고	20200309	▽▽▽	●도 ●시 ●면 ●리 547번지 2호	농·어업용	
39	신고	20210218	○●○	▣도 ▣시 ▣면 ▣리 950번지 1호	농·어업용	
40	신고	20210513	○●○	●도 ●시 ●면 ●리 400번지	농·어업용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지하수 개발 신고 대상 중 3개월 이상 공사 중지 등의 대상에 대해서는 신고 효력 상실에 대한 통보를 하고, 준공 및 종료신고 미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의 적절한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상주시 ▽▽과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83조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같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83조 및 제86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청문 과정을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하되, 영업정지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42호, 2018. 8. 14.)」 제6장 제2호 등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관청은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¹³⁾(이하 “건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통보받은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조

13)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건설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2001년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건설업 등록·신고수리 및 건설업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정보를 관리하며,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센터에 운영·관리를 위탁

사를 실시하고 처분결과(무혐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청문을 실시한 경우 청문 일자 및 청문내용을 건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1. 건설업 실태조사 심사업무 후속조치 등 미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1. 사’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관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고,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9. 가’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문 등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업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하여 지체없이 실태조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주시 ▽▽과에서는 2019. 9. 30. 국토교통부로부터 2019년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통보¹⁴⁾받고, 2019. 10. 8.부터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중 자료제출 기간인 2019. 10. 31까지 ‘㉠㉠㉠㉠’, ‘㉡㉡㉡㉡’ 및 ‘㉢㉢㉢㉢’의 실태조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20. 11. 16. 국토교통부로부터 “2019년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건수 44건 중 미이행 3건으로 조사대상 업체임에도 현재까지 조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이행하고, 조사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 조치할 수 있으니 실태조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¹⁵⁾을 받고도 조사대상 업체에 정당한 행정처분 없이 2021. 12. 14. ‘㉢㉢㉢㉢’의 폐업신고를 수리하였으며, 감사 기간인 2022. 5. 4.에서야 ‘㉠㉠㉠㉠’, ‘㉡㉡㉡㉡’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실태조사 심사 및 후속조치 업무

14) 국토교통부 ○○○○과-○○○○(2019.9.30.) ‘2019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

15) 국토교통부 ○○○○과-○○○○(2020.11.16.) ‘건설업 실태조사 이행철저 협조(참고)’

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21. 12. 20. 국토교통부로부터 2021년 부실·불법 의심 건설업체를 공문으로 통보¹⁶⁾받고 2022. 1. 5.부터 위반·부실·불법 의심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가 실태조사 자료제출 기한인 2022. 1. 28.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정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다가 감사 기간인 2022. 5. 2.에서야 소명자료(시정명령)를 제출하게 하는 등 업무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2019년 실태조사 업체인 ‘□□□□’, ‘⊙⊙⊙⊙⊙’, ‘□□□□’, 2021년 부실·불법 의심 건설업체인 ‘□□□□’ 등 4개 업체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건설업 등록기준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확인되지 않는에도 건설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었다.

2. 기술능력 기준 심사업무 처리 부적정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제3항에 따르면 건설업 기술능력 적격여부의 확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3. 가.’에 따르면 기술능력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기준일은 전년도 실태조사 조사일(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 실시를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한 날) 이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상주시 ▽▽과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기술능력 미달 의심 업체를

16) 국토교통부 ○○○○과-○○○○○(2021.12.20.) ‘2021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

그 결과 ■■■■■주식회사 등 2개 업체는 각각 2019. 12. 26., 2021. 1. 5
등록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처리되어 [표 2] 와 같이 총 16건(469,670천 원)의 공
사계약을 하는 등 건설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었다.

통 보 일	업 체 명	부적정 내용	처리일자	비고
2019.10.08	■■■■■■■■(주)	기술인력 1명 미달(2018.10월~12월)	2019.12.26	
2020.10.29	(주)■■■■■■	기술인력 1명 미달(2019.8월~12월)	2021.01.05	

[illegible]

계 약 명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계약금액 (원)	계약상대자
□□□□ □□□□투어로드 안전헬스 교체 설치공사	2021. 10.05	2021. 10.11	2021. 11.09	3,680,000	"
□□ 대로3-2(□□역) 주변정비공사	2021. 03.19	2021. 03.25	2021. 06.21	33,106,000	■ ■ ■ ■ ■ (주)
▽▽ △△리 도로정비공사	2021. 04.16	2021. 04.23	2021. 06.29	29,181,000	"
□□읍 행정복지센터뒤 ○로(3-13) 편입가옥 철거공사	2021. 04.30	2021. 05.07	2021. 08.23	24,606,000	"
△△산 ■■■■로 주차장설치공사	2021. 05.10	2021. 05.17	2021. 07.22	37,519,000	"
○○○○○ ○○○○ 주변지역 도로정비공사	2021. 05.18	2021. 05.24	2021. 06.23	39,456,000	"
△△초등학교 ■■■■■■■■ 정비공사	2021. 11.16	2021. 11.24	2022. 04.24	41,880,000	"

3. 행정처분 미이행 및 건설업 폐업신고 수리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¹⁷⁾ 실효 또는 기간 만료 등)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관청에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5년,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20% ~ 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 자본금 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 받아 건설업 등록 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또한 「건설업 관리규정」 ‘제5장. 3. 가. ~ 다.’의 규정에 따르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폐업수리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 후 처리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업 등록관청은 등록말소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별로 건설업을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상이하므로,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위반 혐의업체를 통보받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폐업신고 수리 조치 전에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주시 ▽▽과에서는 건설업 실태조사 업체인 ‘○○○○○’, ‘●●●●●●●●’, ‘(주)○○○○○○○○’, ‘▣▣▣▣’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예상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실태조사 기간 중인 2019. 10. 23., 2019. 11. 5., 2020. 10. 28., 2021. 12. 14. 폐업신고를 수리하였다.

또한 ‘○○○○○○(주)’에 대하여 2018. 11. 29. 건설산업정보센터로부터 건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위 업체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2018. 11. 21. 실효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9. 7. 4. 건설산업정보센터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사실 재통보를 받은 후 위 업체에 대해 적정한 영업정지 처분없이 2019. 7. 8. 폐업신고 수리하였다.

그 결과 위 5개 업체는 적정한 행정처분 없이 폐업신고 수리하여 건설업 재등록 기간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고, ‘○○○○○○(주)’는 2018. 11. 29.부터 2019. 7. 7.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에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 ▢▢▢▢) 및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주), (주)■■■■■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상주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 ㉢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공사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 ㉡ 소하천 정비사업	㉢	●●	하천정비 L=2.2km, 교량 4개소	1,719	2021.03.03	2021.03.10.~ 2023.05.16.	(주)○○○○○ ●●●	40%
㉢ 소하천 정비사업	■	㉣	하천정비 L=2.8km, 교량 4개소	4,756	2020.02.25	2020.03.03.~ 2024.04.22.	(주)●●●○ ◀◀◀	75%

1. 공사비 과다 계상 및 공사감독 업무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987호, 2020. 12. 16.)」 제124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148조에 따라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 10. 8.)」, 제2장 제2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 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정밀히 확인·검측하여 공사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에 공사무량 및 공사자재 등이 과다 산정되었거나 현장여건의 변동 등으로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가. ㉢ ㉢ 소하천 정비사업

상주시 ▲▲과에서는 ㉢ ㉢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가설창고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보고 및 가설 창고 설치 비용 1,598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 조치하지 않았으며,

현재 시공 중인 ㉢ 제2교(교량) 설치와 관련하여 교대 시공 시 근로자의 떨어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상된 시스템 비계(249m²)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음에도 사업비 5,294천 원을 감액 조치하지 않았다.

또한, 「하천설계 실무요령(국토교통부, 2016. 12.)」에 따라 하상세굴로 인한 호안구조물 기초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석 밑다짐공은 설계에 반영 대상이 아님에도 제내지(제방과 사유지 사이)구간의 제방 사면 보호 구조물(식생옹벽 블록) 기초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비 4,094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

나. ㉡ 소하천 정비사업

상주시 ▲▲과에서 추진하는 ㉡ 소하천 정비 사업은 설계에 현장사무실(330 m²)을 조립·설치하도록 31,900천 원(제경비 포함)이 반영되어 있으나, 시공사에서는 현장여건 상 인근 마을회관을 임차하여 현장사무실을 운영하였음에도, 1차분 공사 준공금 내역서에 현장사무실(가설사무소 90m² 및 창고 17m²) 조립 비용 15,400천 원(제경비 포함)을 청구하였으며,

▲▲과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검사하여 현장사무실 조립 비용 15,400천 원(제경비 포함)을 1차 준공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현장사무실 설치 비용 16,500천 원(제경비 포함)을 장래분 지급예정액에서 감액하지 않았다.

또한, 공사 시행 과정에 터파기 등으로 발생한 토사 운반에 대해 [표 2]와 같이 수량과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203,500천 원(제경비 포함)에 대해 감액하지 않고 있다.

[표 2] 사토운반 처리 현황

토사운반거리	수 량(m ³)		금 액(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4.1km	-	2,620	-	8,116,760
5.1km	-	2,900		9,961,500
6.8km	3,500	5,300	14,644,000	22,175,200
10.0km	4,875	11,310	26,939,250	62,499,060
10.5km	12,400	13,440	71,039,600	76,997,760
10.9km	7,680	7,680	45,365,760	45,365,760
15km	13,800	-	105,238,800	-
30km	6,700	-	93,210,400	-
30km(리핑암)	391	-	7,467,709	-
현장처리(흙쌓기)	-	3,848	-	7,670,160
합 계(제경비 제외)	49,346	47,098	363,905,519	232,786,200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230,986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부당 지급된 사업비 15,4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소

내 용

상주시 ○○○○○소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처리구역 ○○○○ 정비사업 및 ■■■ 처리구역 ○○○○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사업기간	도급자	건설사업 관리자	비고
	읍면	리동						
○○처리구역 ○○ ○○ 정비사업	□□	□□	오수관로 L=24.2km 배수설비 4587구	9,481	2020.06.11.~ 2023.01.20.	(주)▽▽▽▽ △△△	(주)□□ ■■■	
■■ 처리구역 ○○○○ 정비사업	■■	■■	오수관로 L=9.7km 배수설비 2397구	3,407	2020.03.13.~ 2022.06.27.	(주)▼▼▼▼▼ ▲▲▲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르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표 2]와 같다.

[표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 5,000 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 7,500 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 10,000 제곱미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설치사업(「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설치 경우만 해당)	사업의 허가·인가·승인 전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처리구역 ○○○○ 정비사업 부지와 사업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면 사업 승인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상주시 ●●●●●소에서는 ●●처리구역 ○○○○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계획 면적이 35,722㎡이며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제외한 계획관리지역 내 사업구역 면적은 22,781㎡로 계획관리지역 대상면적인 10,000㎡를 초과함에도 사업의 승인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85호, 2018. 7. 1.)」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종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정밀히 확인·검측하여 공사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관리 및 실정보고 미비

그런데도 (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처리구역 ○○○○ 정비사업 및 ■■ ■■처리구역 ○○○○ 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수 설비 구간의 관로 터파기 시공 폭이 당초 0.83~0.98m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시공사가 관로 터파기 폭을 0.8m로 일괄 시공한 것을 상주시에 실정 보고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해 구조 및 안전성 검토없이 추진하여 ●●처리구역 사업비 5,900천 원, ■■ ■■처리구역 사업비 30,850천 원 총 36,75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 조치하지 않았다.

또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안전휨스를 일부구간(L=545m)에 설치하지 않고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정보고 및 4,100천 원(제경비 포함) 감액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시공상세도 미작성

또한,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지침, 2010. 7. 1.)」에 따르면 시공상세도 작성은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청 및 감리원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 ■■처리구역 ○○○○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 내 시공상세도 작성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시공사가 공사 진행 시 도면 재작성 등 제반 조치를 미이행하고, 발주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할 수 없음에도 추진한 것에 대해 실정보고 하지 않았으며, 시공상세도 미작성분에 대해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65,910천 원, ■■ ■■처리구역 ○○○○ 정비사업은 32,640천 원 총 98,55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 총괄수행 지도·점검 미흡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제6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85호, 2018. 7. 1.)」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상주시 ○○○○○소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이 부적정하였음에도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128,85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부당 지급된 사업비 10,55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허가(신고)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건축면적 산정 부적정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의하면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6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에서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60퍼센트 이하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신고가 접수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건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상주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21. 12. 2. 건축주 AAA로부터 상주시 ㄱ동 157-8번지 상의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 음식점)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건축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

령」 제119조에 따른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아닌 외벽의 중심에서 안쪽으로 10밀리미터 이동한 선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여 건축면적 41.28제곱미터, 건폐율 59.83퍼센트로 부적정하게 산정하였고, 외벽의 중심선으로 산정 시 건축면적 41.55제곱미터, 건폐율 60.22퍼센트로 법정 허용한도를 0.22퍼센트 초과하였는데도 건축면적 재산정 요청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건축신고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현황

구분	대지위치	신고일 (신고수리일)	건축주	용도	건폐율(%)		층수	비고
					현황	신청		
신축	상주시 ㄱ동 157-8	2021.12.2. (2021.12.10.)	AAA	단독주택, 제2종근생	60.22	59.83	2	건폐율 0.22% 초과

2. 내화구조 검토 부적정

「건축법」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20. 1. 25.)」 제3조에 내화구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붕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한국건설기술원장이 관련 고시에 따라 인정한 구조 등이어야 하고 이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건축허가(신고)를 처리할 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이 관련 규정으로 지정된 내화구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상주시 ■■과에서는 아래의 [표 2]와 같이 ㄴ동 181-6번지에 건축

주 BBB이 신청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증축허가 및 건축주 CCC가 ㄷ동 76-4번지에 신청한 단독주택 증축신고를 처리하면서 지붕의 심재가 준불연 단열재인 샌드위치패널로 내화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 검토를 소홀히 하여 건축허가(신고)를 처리해 준 사실이 있다.

[표 2]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미 설치 현황

구분	대지위치	허가(신고)일	건축주	용도	연면적(㎡)		층수	비고
					기존	신청		
허가	상주시 ㄴ동 181-6	2020.11.16.	BBB	사무소	198.95	89.68	3	내화구조 미설치 (난연지붕 설치)
신고	상주시 ㄷ동 76-4	2021.11.23.	CCC	단독주택	245.29	17.28	3	내화구조 미설치 (난연지붕 설치)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운영사업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상주시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1. 6. 14. (주)○○○○○○○○ (대표 ◀◀)과 공사계약을 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운영사업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도급자	비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 근린형)○○○○ 운영사 업 신축공사	근린생활시설 690.592㎡	2021. 6. 23. ~ 2022. 6. 27.	1,285	(주)○○ ○○○○	

1. 안전관리 업무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면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한 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1항 및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가설구조물의 공사를 할 때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해당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운영사업 신축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일 경우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상주시 ☒☒☒☒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운영사업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해당 공사가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나 해당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 제출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검토·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품질시험계획서 미승인 등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5]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총 공사비가 100억 원 이하이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20㎡ 이상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품질검사 대장 작성·관리 및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운영사업 신축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의 검사 장비 구비, 시험실 설치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상주시 ○○○○○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운영사업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품질시험계획서를 승인·통보하지 않았고, 시공 업체에서 2022. 4. 28. 감사일 현재까지 품질시험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품질시험계획에 반영된 시험항목 중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현장 시험이 49회이나 공인기관 의뢰 1회 실시(47회 미실시, 잔여계획 1회 제외), 건물 외부 대리석 시험 미실시, 물 실험 미실시 등 계획에 비하여 부족하게 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확인을 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실정보고 부적정 및 설계변경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5호, 2021. 4. 1.)」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상주시 ○○○○○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운영사업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조립식 가설울타리 설치(106m) 시 기초 콘크리트 타설(4.028m³)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비 1,807천 원, 사토 운반 거리가 실

제로 사업장(상주시 ㄱ동 157-13번지)에서 반출지(상주시 ㄴ동 128-1번지)까지 4km이나 당초 설계한 10km로 적용하여 사업비 3,768천 원, 철강설 단가를 조사 가격 중 최고가(331천 원)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최저가(120천 원)를 적용하여 사업비 701천 원이 과다하게 적용되었는데도 설계변경이나 감액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실정보고를 하면서 순환골재 운반 거리가 사업장(상주시 ㄱ동 157-13번지)에서 골재장(상주시 ㄷ읍 ㄱ리 235번지)까지 18km이나 25km로 산정하여 사업비 3,220천 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승인해 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조립식 가설울타리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제외, 사토 운반 거리, 철강설 단가, 순환골재 운반 거리 등으로 공사비 13,314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시험실 설치 등 품질관리 미흡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13,314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